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 1.

■ 연구기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동혁 (경희대학교 강사)

박찬수 (책문화연구소 대표)

손수호 (인덕대학교 교수)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이은호 (교보문고 차장)

이호신 (한성대학교 교수)

한주리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 가나다 순

목 차

I. 개선안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 출판권 설정계약서	1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35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53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70
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82
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90

II. 신규안 :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1.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98
2. 오디오북 유통계약서	109
3. 오디오북 제작계약서	118
4.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서	123

♣ 참고문헌	130
--------------	-----

I. 개선안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 출판권 설정계약서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5. 저작물 이용계약서 (국내용)
6. 저작물 이용계약서 (해외용)

1.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_____과(와) 이를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출판사'라고 함)는(은)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자 및 출판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1조에서는 '출판권 설정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출판권설정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발행하는 내용의 출판권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과는 다르다. 저작물의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설정출판권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당연히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그 설정 내용을 등록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생긴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너무 얽매이지 않는 출판허락계약을 선호한다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등록에 의해 대항력까지 갖출 수 있는 출판권 설정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출판권 설정계약은 어디까지나 종이책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전자책(e-Book)이나 오디오북 등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관한 것에는 '배타적발행권'이 미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63조 제1항에서 '출판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印刷)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文書) 또는 도화(圖畫)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출판'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출판권 : 출판사가 저작권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5.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6.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7. 부차권(부차적 이용허락) : 법적 권리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원저작물의 부가적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로 통용된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재이용 및 축약본이나 요약본을 만들거나 라디오에서 저작물을 읽을 권리, 저작물에 기반한 상품을 만들 권리 등에 대한 것으로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9.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이다. 출판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관련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하여 뜻을 풀었다.

제3조 (출판권의 설정)

- ①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사는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3조는 출판권의 설정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서 ‘설정(設定)’이란 쌍방의 계약에 의해 새로이 제한적인 물권 등 배타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출판권 역시 그러한 설정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흔히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관련 조항을 출판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허락계약에 불과한 출판허락계약의 경우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 곧 출판허락계

약에 의한 채권적 권리와 설정출판권이 갖는 준물권적인 배타적 권리를 똑같은 ‘출판권’이라는 이름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¹⁾

제4조 (출판권 설정의 등록) 출판사는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는 출판권 설정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출판권도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출판권 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²⁾ 곧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출판사와 이중으로 똑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출관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출판사로 하여금 이를 출판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출판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출판권 등록은 출판권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 대상 저작물을 출판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이다.³⁾ 계약서 말미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제5조 (배타적 이용)

-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는 출판권자의 배타적 이용에 따른 제한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제1항에서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이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출판에 이용되는 저작물이 장편소설처럼 일부분의 이용만으로는 출판물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만일 출판의 목적인 ‘위 저작물’이 ‘시집’ 또는 ‘소설집’과 같이 ‘일부’의 이용만으로도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로 약정하여도 무방하다.

1)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14쪽.

2)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3) 저작권법 시행령 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축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제2항에서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다른 곳에서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출판물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판권자 이외의 자(다른 출판사)에게 발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제6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 ① 출판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일로부터 _____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__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____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는 출판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은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경우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존속한다. 여기서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고 했으므로 양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이 부분에 유의해서 계약기간을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이러한 출판권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저작재산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주로 출판권자가— 재고 등을 이유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제2항에서처럼 미리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쌍방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계약 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계약 조건으로 갱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한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같은 계약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자동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출판사는 자동 연장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고, 아울러 자동 연장 이전까지 발생한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자동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더 이상 계약 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 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은 종료된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출판 시기 및 반환)

- ① 저작권자는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출판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출판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_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는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출판권자는 저작권법 제58조에 따르면 ‘언제까지 출판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없는 한, 완전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이라고 한 것은 제1항에서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즉,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완전원고’라는 말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출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완전원고 인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2항에서 말하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의 ‘출판’은 단순한 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제물을 배포하여 유통의 상태에 두는 것, 즉 일반서점에 진열되어 있어서 독자들이 구입해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이라고 했으므로 특약에 의해, 즉 설정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출판을 완료하기까지의 기간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⁴⁾ 설정행위로서 결정된 기간은 나중에 출판권자의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정된 기간 내의 출판 이전에 저작자로부터 원고가 약정된 기일 안에 출판권자에게 인도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출판자나 편집자의 원고독촉에도 불구하고 기일 안에 원고가 인도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작자의 원고 인도 의무를 별도의 법조문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다(독일 ‘출판권에 관한 법률’ 제10조).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 그것은 출판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인도’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긴 때문일 것이다.

제3항은 ‘원고(원화)의 반환’에 관한 조항이다. 근래 들어 대부분의 문자 또는 이미지 원고는 이메일 등을 통한 전송 형식으로 주고받는다든 점에서 실무상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송이 아닌 면대면 상황에서 직접 주고받은 육필원고 또는 원화(原畵) 등과 같은 실물 원고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보존적 가치를 고려하여 추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원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때그때 상호 협의해서 그 내용을 결정하면 된다.

제4항에서는 완전원고의 판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해지가 아닌)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출판 실무에 있어 살펴보면 실제로 한 권짜리 시나 소설 또는 에세이를 모아 만드는 단행본은 완전원고 입수 후 일주일 또는 한 달 만에 출판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며, 특수한 백과사전 등은 완전원고가 입수되었더라도 그림이나 사진 등 자료의 배치와 내용 수정 등으로 인해 수 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8조는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창작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출판권자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자 등에게도 출판권자에게 완전한 저작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후 판매 촉진 활동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저작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제1항에서는 이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출판사로 하여금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계약의 완전성을 얻고자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는 ‘저작인격권의 존중’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제11조부터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는 한편,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公表權)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공표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자는 자기가 작성한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아니면 공표하지 않을 것인지, 공표를 한다면 배타적발행, 출판 또는 연극, 영화, 방송, 전송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리고 공표의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표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자에게 주어진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한편, 이러한 공표권은 미공표 저작물에 한해서 단 한 번밖에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표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방법으로도든 원저작물이 공표된 후라면 공표의 방법이 달라진다 해도 다시는 공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허락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게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저작물에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원저작자를 무시하고 저작자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히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곧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내용은 물론 형식 및 제호 등에 있어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저작물에 구현된 저작자의 사상 및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 완전성 혹은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용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효과를 드높이기 위해서 저작물의 일부를 없애거나 고치거나 고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자(誤字)나 탈자(脫字)를 고치는 것은 예외이다. 여기서 내용 혹은 형식의 변경이란, 저작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단으로 주제를 변경하고자 전개과정을 바꿈으로써 원작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경우, 등장인물

또는 배경 따위를 바꿈으로써 마찬가지로 원작의 본질을 해치는 경우, 그리고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거나 시를 소설로 바꾸는 것처럼 표현형식 자체를 고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하지만 저작물의 본질적인 변경이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번역 또는 편곡 및 개작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니다. 다만, 번역에 있어서 필연적인 변경과는 상관없는 중대한 실수로서의 오역(誤譯) 따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사유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호(題號)의 문제가 있다. 제호란 저작물의 제목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제호는 저작물의 내용을 집약하여 짧은 문구로 표현한 것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변경한다면 저작자에게는 사실상의 인격적 침해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주제나 내용과는 상관없이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만을 위해 제호를 무단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원래 제호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작성하는 사람이 다른 저작자의 제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제호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저작권법 제정의 취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저작권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인데, 만약에 모든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랑’이란 제목으로 글을 썼다면 이후에는 그 누구도 ‘사랑’이란 제목으로 저작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엄청난 혼란이 일어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보다는 일부에 의한 독점현상 때문에 폐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독창적인 제호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여 보호하기도 한다.⁵⁾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작물의 제호에 한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⁶⁾ 다만, 그것이 저작물의 내용과 어울릴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격권이란 정신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그것을 경제적 또는 물질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격을 소유한 저작자로서의 당사자만이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정도를 느낄 수 있고, 가해자의 침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위자료(慰藉料)’라고 하여 물질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에서는 그러한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드러난 저작인격권의 성질은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저작자 자신만이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처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것을 아는 어느 이용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무시하고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이용했다면—예를 들어, 저작자의 이름을 인지도가 높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출판하거나 내용을 임의로

5) 제호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아 보호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 저작권법 제5조 참조.

6) 제호 자체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저작물이 복제된 출판물을 예로 든다면 출판물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매우 독창적인 제호라면 산업재산권에서의 상표로서,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개작하여 외설물로 둔갑시키는 등— 원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임은 분명하다.

제2항은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자가 사망하여 저작인격권이 사라지고 없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 또는 상속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이란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서 그들의 저작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뜻한다. 그러므로 글과 그림이 한데 어우러진 저작물로서 그것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음악에 있어서 작곡자가 서로 다른 작사 부분과 작곡 부분을 각기 가사집과 경음악 디스크 또는 파일로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지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15조에서는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저작자 전원이 합의(合意)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의 주체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합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통념상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합의에 따라 다수결이면 가능하다는 뜻에서 신의(信義)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신의에 반하여”란 의미는 “사전에 뚜렷이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공동저작물의 작성 목적, 저작인격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의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여길 만한 상황”⁷⁾이다. 예를 들어, 공동저작물을 책으로 출판함에 있어서 비교적 좋은 조건을 제시한 출판사가 있는데도 저작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의 다른 출판사를 고집한다면 공표권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바,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저작자들의 합의만으로도 공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다음으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함에 있어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즉, 저작자가 여럿이다 보니 합의를 거치는 단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공동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서 대표로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가 행사한 대표권이 저작자들 내부의 제한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공동저작자들끼리 인세(印稅)로서 출판물 정가의 10% 이상이면 이의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고 대표자에게 모든 계약사항을 위임하였는데, 나중에 계약서에 실제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보니 인세가 8%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인가 아닌가의

7) 이규호(2010), 『저작권법-사례·해설』 (서울:진원사), 55쪽.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 상대방인 출판권자가 저작자들끼리 인세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표자만을 믿고 계약을 맺었다면 저작자들끼리의 내부 합의와는 상관없이 계약 상대방을 선의로 해석해서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내부의 합의사실을 알고서도 대표자를 설득하거나 매수한 끝에 맺어진 계약이라면 그 계약은 악의적인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된다. 물론 저작자 내부에 가해진 제한으로서의 합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별개의 문제이다.

제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표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10조는 ‘교정’에 관한 조항이다.

제9조에서 살핀 것처럼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정 책임은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저작자가 아닌 단순한 저작재산권자인 경우에는 저작자와의 확인 과정을 같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스스로 교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그 과정을 전문 편집자를 직원으로 두고 있는 출판사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수행된 교정 및 교열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작인격권자인 저작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11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

- ① 저작자는 출판사가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 ② 출판사는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필요한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한다.
- ④ 초판 1쇄 발행 이후 중쇄 또는 중판을 발행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초판 1쇄 발행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는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제58조의2를 준용하면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⁸⁾ 이는 저작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까닭에 저작재산권자 또는 복제권자라고 하지 않고 ‘저작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

8) 저작권법 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쇄(重刷) 또는 중판(重版)의 경우는 저작물에 수정이나 증감을 해도 출판권자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 역시 무조건적인 저작자의 의사에 의한 수정·증감이 아닌 합리적인 수정 또는 증감을 나타낸다. 즉, 저작물을 과도하게 수정하거나 증감함으로써 출판권자로 하여금 출판의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출판공정에 많은 변동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정 또는 증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작물의 성질, 출판권자의 부담 정도, 그리고 출관계의 관행 등을 참작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저작자의 과도한 수정·증감으로 출판권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반대로 저작자의 정당한 수정 또는 증감 요구를 출판권자가 묵살함으로써 저작자가 입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배상 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2항을 보면, 저작권법에 따르면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정당한 수정·증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판권자가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저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저작물에 대한 결정적인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거나 시간이 지나 저작물의 내용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저작자가 새로운 출판시기를 알지 못해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했다거나 특약에 의해 재출판의 시기를 알리지 않기로 했다면 출판권자에게 이 조항에 따른 통지의무는 없다. 그 밖에 출판권자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이행을 게을리함으로써 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3항에서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완전원고로서의 저작물을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그것을 출판물로 제작하고 홍보하여 판매에 이르는 데에 드는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일 출판사에서 출판물의 기획 과정을 전부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정 저작자에게 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작에 필요한 비용까지 출판사가 부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른바 ‘자비출판(自費出版)’의 경우에는 저작 및 출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저작자가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출판권설정계약이라면 제3항의 규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또, 제4항은 제1항에서 우려되는 부분, 즉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증감함으로써 출판권자로 하여금 출판의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출판공정에 많은 변동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부담액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4항을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특약사항으로 금액의 수준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12조 (저작권의 표지 등)

- ①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제12조는 ‘저작권의 표지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출판권자의 또 다른 의무는 복제권자를 표지(標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약이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곧 복제권자의 표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및 복제권자의 검인
3. 출판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표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처 명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다. 한편, 복제권자를 표지할 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내 복제권자의 검인 첩부(檢印貼付), 즉 검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붙이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저작자와 출판자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나타낼 수 있다. 출판자에게는 서로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작업상의 번거로움만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인식되는 반면에 저작자로서는 자기 저작물이 얼마나 출판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내세워 유용한 제도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한다. 어쨌든 “특약이 없는 때에는”이란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양쪽의 견해를 절충하여 특약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복제권자의 표지는 물론 검인의 첩부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⁹⁾

이와 같은 “복제권자를 표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출판권자에게는 출처 명시 위반의 죄와 같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8조 참조).

제13조 (정가, 판형, 제책 방식 등)

-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 방식 등은 출판사가 결정한다. 다만,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출판사는 적극적으로 저작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중쇄(중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사가 결정한다. 다만, 출판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 ③ 출판사는 출판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는 ‘정가, 판형, 제책 방식 등’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출판계의 관행은 위의 제11조 3항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한다”는 원칙의 취지에 따라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 방식 그리고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권자인 을이 소신껏 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자기 저작물에 대한 자존감이나 소신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저작권자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출판사는

9) 1957년 제정된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출판권자는 각 출판물에 저작권자의 검인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1987년에 전면개정하면서 절충형으로 바꾼 바 있다. 이러한 검인첩부제도는 1901의 독일 출판권법에서 출판권설정제도와 함께 검인제도를 인정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이 이를 도입하여 저작권법에 규정된 것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독일은 물론 일본에서조차도 검인제도만큼은 삭제되었다.

적극적으로 저작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다만, 출판물을 홍보 및 광고하는 과정에서 과장 및 허위 광고로 인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제3항의 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14조 (계속 출판의 의무) 출판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판매량이 _____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는 ‘계속 출판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출판권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출판권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항상 시중의 유통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구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적어도 품절(品切)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관행에 따라”라는 표현은 출판권자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만일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출판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출판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판계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어떤 책을 출판한 이후 아무리 홍보에 치중해도 구매율이 저조하여 반쯤에 의한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것은 절판시킬 수밖에 없는데도 이 조항 때문에 계속해서 출판해야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6개월 동안 판매량이 일정부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은 독자들의 구매 욕구가 매우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더 이상 출판물을 유통시키지 않는 등의 악의적인 상황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일반적인 출판 관행에 따라 계속 출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15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출판사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정 계좌를 통하여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기타(특약) _____

② 출판사는 _____개월에 한 번씩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출판사가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약정기일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__%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는 ‘저작권사용료 등’에 관한 조항으로, 당사자들에게 있어 출판권설정계약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출판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인세(印稅)’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저작권사용료’이다. 이는 저작물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용자로부터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금전을 가리키는 말로, 유형물(도서)에 매겨진 가격(정가)의 일정한 비율로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⁰⁾ 하지만 세간에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저작권사용료의 비율과 지불 방법을 놓고, 또는 이미 정해진 계약 내용을 놓고 저작재산권자(저자)와 출판권자(출판사) 사이에 상당한 진통을 겪거나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잠재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어떤 유형의 출판계약이든 거기에는 항상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게 마련이고, 이를 두고 언제든지 분쟁이 생겨날 소지가 많았던 것이다.¹¹⁾

이 같은 관행들은 대개 과거로부터 출판계약에 있어 합리적인 저작권사용료 지불 방법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인세율과 지불방법이 정해지거나, 저작권사용료로 지불된 금액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편집저작물이나 공동저작물처럼 다수의 저자를 상대로 할 때에 자칫 일어나기 쉬운 오해와 분쟁의 가능성을 이해한다면, 그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출판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여 지불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부수에 따른 선지불 방법이 있다. 도서의 정가를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에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재산권자에게 도서가 발행되기 전에 지불하는 방법으로, 대개 유명저자와 이것의 흥행에 자신 있는 출판권자 사이에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른바 저작재산권자의 ‘검인지’를 붙이는 것도 이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쌍방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가 없는 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 방법은 또한 일면 저작재산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투기나 다름없어서 무리한 광고 또는 판촉 경쟁을 불러와 결국에는 양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둘째, 발행부수에 따른 후지불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일단 출판계약을 했음에도 계약금 형식의 선지급금 없이 먼저 도서를 발행한 후 일정기간 안에 그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중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는 대개 저자가 그 방면의 초보로서 출판사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한 경우이거나, 이후 발행부수에 대해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높을 수 있다.

10) 분쟁의 일차적인 원인은 양쪽 당사자의 입장이 한결같지 않다는 데 있다.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당장 책으로 낼 만한 원고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고정독자층을 갖고 있는 유명저자를 섭외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고율의 저작권사용료를 약속하거나 고액의 선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책을 출간하지만 이후 그것이 흥행에 실패하는 바람에 위기를 맞이한다거나, 처음에는 흥행 가능성이 희박한 무명저자였기에 저작권사용료가 아예 없거나 매우 낮은 비율의 저작권사용료 지불을 전제로 하여 출간해준 저자가 이후 유명해지는 바람에 쌍방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저서만 출간해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책이 많이 팔리게 되면 애초의 겸손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무리하게 출판사를 윤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계약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다.

11) 저작권사용료(인세) 지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김기태(1999), 『책—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 (서울:도서출판 이체), 35~53쪽 참조.

셋째, 발행부수에 따른 선지불 및 후지불 방법의 절충형이 있다. 초판 1쇄에 한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발행부수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먼저 지불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도 양자 사이에 신뢰도가 낮다면 성공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저작자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출판사에서는 울상을 짓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면 결국 아전인수 식 해석만 남기 때문이다. 그 지불 시기에 있어서도 주의를 요한다.

넷째, 판매부수에 따른 후지불 방법이 있다. 이는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삼는 탓에 저작권사용료는 언제나 후지불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의 입장에서 판매가 호조를 보임으로써 예상 밖의 수입이 생기거나 출판사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다. 이 경우 필수적인 것은 출판사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판매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서점별 주문 및 수금 양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섯째,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를 혼합한 절충형이 있다. 출판은 대개 출판사의 주도적인 기획 아래 진행된다. 따라서 출판의 결과에 따른 일차적 책임은 저자보다는 출판사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도서 한 권 분량의 원고를 갖고 있거나 일정한 기일 안에 이를 완성할 수 있는 저자에게 출판사가 먼저 접근해서 출판을 권유했다면 일단 출판사는 도서 판매에 따른 위험부담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를 혼합한 방법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자가 약정한 일정의 발행분 또는 초판 1쇄에 대해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작권사용료를 출판사에서 먼저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하고, 이후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나중에 지불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제13조와 이어지는 제14조 ‘선급금’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에 해당한다.

여섯째, 저작권사용료 기준비율의 누진(累進) 또는 누감(累減) 적용 방법이 있다. 이는 그 기준이 발행부수든 판매부수든 관계없이 그 비율을 확정해 놓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비율을 차등적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먼저 누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만 부까지는 5%, 이후 3만 부까지는 8%, 이후 5만 부까지는 10%, 그 이상은 12% 등으로 점점 그 비율을 높여가는 방식이다. 반면에 그 부수가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비율이 줄어드는, 이른바 ‘누감세’의 방법도 있다.

제2항에서는 발행(또는 판매) 부수 통보 기일에 관한 약정 및 이를 어겼을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양자 모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전체 저작권사용료를 벗어나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제3항은 저작권사용료 면제 상황에 대한 조항이다. 발행부수 기준의 저작권사용료 지불방법이라 하더라도 납본을 포함하여 신간 안내, 서평, 그 밖의 각종 홍보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부수는 전체 발행부수에서 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렇더라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부수를 초과하는 것은 곤란하며, 공제 부수의 활용 내역을 알려주는 일 또한 출판사의 당연한 도리라고 할 것이다.

제16조 (선급금)

① 출판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_____ 원을 저작자에게 지급

한다.

-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_____ 부로 정한다.
- ③ 출판사는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6조는 ‘선급금’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서 선급금은 곧 이 약정에 관한 신뢰를 높일 목적으로 지불되는 일종의 계약금이며, 통상적으로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관행 또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2항에서는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사용료를 미리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제3항에서는 이후 지급될 저작권사용료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제17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보 등)

- ① 출판사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_____ 부, 중쇄 발행 시 _____ 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__%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7조는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보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초판 또는 개정판이나 중쇄를 발행함에 있어 그때마다 출판사에서는 출판된 도서를 일정부수 저작재산권자에게 증정한다는 내용이다. 해당부수는 양자가 정하기 나름이며, 초판 1쇄보다는 중쇄의 경우에 그 부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항은 1항에서 정한 증정 부수를 초과하여 저작재산권자가 더 필요한 부수가 있을 경우 이를 서점에서 정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할인된 가격으로 출판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오랜 출판계의 관행으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18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영화, 드라마, 연극 등을 위한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저작권자 및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저작권자 및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자격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2차적 및 부차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 2차적 및 부차적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 및 발생 수익의 분배, 수수료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8조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가리키며, 이는 또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곧 여러 가지 저작물의 형태를 원저작물로 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를 2차적저작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 또는 말로 이루어진 저작물을 원래 사용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말이나 글로 되어 있는 원저작물을 다른 나라 언어, 즉 외국어로 바꾸거나 외국어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우리말이나 글로 바꿀 수 있는데, 이를 ‘번역’이라고 한다.

둘째, 특정 연주 형태에 따라 악기 또는 가창자의 음역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음악 저작물의 표현 형식을 조정하는 것을 ‘편곡’이라고 한다.

셋째, 미술저작물에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조각의 형태로 나타내거나 조각을 그림으로 그리는 등 표현 형식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변형’이라고 한다.

넷째, 어문저작물로서의 소설이나 일반적인 음악저작물을 영상물로 바꾸는 것처럼 이미 작성되어 있는 저작물을 다른 장르로 변형시키는 것을 ‘각색’이라고 한다.

다섯째,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의 영상제작이라는 것은 영상저작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을 위한 각본화, 즉 각색도 포함된다.

여섯째, 위에서 열거한 방법 이외에도 소설을 시로 표현하거나 시를 소설화하는 것처럼 ‘그 밖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2차적저작물로 활용되려면 우선 원저작물의 존재가 부각되어야 한다. 출판이야말로 바로 원저작물의 존재감을 드높이는 수단으로 널리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출판사에서 펼친 각종 홍보 전략과 실천이 그 원동력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도 2차적저작물 작성 또는 재사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가장 먼저 연락을 보내오는 곳이 출판사라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출판권자가 아닌 저작재산권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제1항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재산권자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대개의 경우에 그렇겠지만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저작권자 및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2차적저작물이 아닌 저작물 그 자체의 재사용에 따른 이용허락에 관한 조항이다. 특정도서에서 실린 저작물의 일부를 또 다른 도서나 정기간행물 등에서 재수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에도 기본적인 이용권한은 저작재산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저작권자 및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2차적 또는 부차적 이용에 따른 실무적인 부분은 출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은 서로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제19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권자가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는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에 관한 조항이다.

출판권의 경우에도 준용되는 저작권법 제59조 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저작자 사망 이후에 관한 규정임을 감안하여 제17조에서는 생사 여부에 관계 없이 저작권자가 출판계약 기간 중에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출판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저작물을 수록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장 수요에 대한 영향성을 고려하여 출판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제20조 (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 등)

-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출판사의 출판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는 ‘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 등’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45조 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출판권이 준용되는 제62조 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출판권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판권자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획득한 권리(출판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제1항에서는 그럼에도 만일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해 준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도이에 입각하여 사전에 이를 출판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출판권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만일 출판권자가 자신의 출판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21조 (판면파일의 구매 및 양도)

-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이 수록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출판사로부터 판면파일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는 ‘판면파일의 구매 및 양도’에 관한 조항이다.

원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이용허락을 얻어 도서 형태의 출판물로 제작하려면 그 과정에서 표지 및 본문에 대한 교정·교열 및 편집디자인이 반영된 판면(版面), 즉 인쇄를 위한 또 다른 원고(原稿)로서의 판면파일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대개 출판사의 인적·물적 투자에 의한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 소유권은 저작재산권자가 아니라 출판권자에게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것은 저작권과 어울려 도서로서 독자들에게 판매의 방법으로 제공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출판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판면파일에 대한 권리와 저작권이 분리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판면파일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판권이 미치지 않는 전자책(e-Book) 제작을 저작재산권자가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출판권자가 제작한 판면파일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수준 높은 전자책을 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제1항은 바로 그런 경우에 있어 만일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출판권이 미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 출판권자가 제작한 판면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그런 경우 판면파일 매수에 따른 비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별도의 서면 또는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은 출판권자에게 판면파일 구매에 관한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동반자로서의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판면파일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호 합의해야 할 조항이라고 하겠다.

제22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출판사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서 굳이 계약서 조문으로 넣지 않아도 되지만, 상호 계약 사항 준수를 촉구하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규정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작성된 계약 내용을 어느 일방이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출판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즉시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미래의 발전적 관계 설정에도 그리 좋은 처사는 아닐 것이다. 다만,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도 양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제1항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일정기간 안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제2항에서는 1항과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계약 이행을 기피한다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조치로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3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서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이나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출판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

제4항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 효과 측면에서 보면 ‘해지(解止)’와 ‘해제(解除)’는 큰 차이가 있다. 현행 민법 제550조에서는 ‘해지의 효과’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해제’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곧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의 발생 사유로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해지권을 인정하지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해지권을 인정하였으며,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었거나, 계약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이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 등에 해지권을 인정하였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따라서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 제125조에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

으로 추정한다.

- ②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남이 입은 손해를 메워주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그 권리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때의 손해금액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저작권 등의 침해를 그 원인으로 하며, 저작권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침해정지 및 예방의 청구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침해행위 당시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존재할 것
- 둘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¹²⁾
- 셋째, 권리침해에 따른 위법성이 있을 것
- 넷째,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
- 다섯째, 권리침해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이를 피해자 측이 입증할 수 있을 것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가해자의 침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산정되는 것이다.

한편, 괄호 안의 단서로서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고 한 것은 정신적인 피해를 뜻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손해배상이라는 차원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제127조의 “명예회복 등의 청구” 규정에 따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데,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닌 ‘위자료(慰籍料)’의 청구에 해당한다.

아울러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인격권 이외의 권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 저작재산권자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금액으로 추정한다는 뜻이다. 실제에 있어서 이익액과 손해액이 있기는 하지만 손해배상

12) 이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관적 요건, 곧 의사능력(意思能力) 또는 책임능력이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귀책사유(歸責事由)’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을 청구하는 권리자 측이 그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어느 쪽이든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입증보다는 이익액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의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즉, 저작물의 무단이용 이후 늘어난 자본 또는 외형상의 성장을 근거로 침해자의 이익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판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영리수준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통상적인 손해액의 기준이 아닌 침해자의 이익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추정규정에 불과하므로 침해자가 다른 증거에 입각해서 이익액을 입증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도 있다.

제2항에 따르면 또한 저작재산권자는 제2항이 규정한 손해액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자가 얻을 수 있는 통상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무단이용에 따른 통상의 산출에 근거한 것으로, 관행으로서 존재하는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로서의 인세(印稅)나 원고료, 출연료 등의 수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만일 인세가 10% 수준인 단행본 1만 부를 5천 원의 가격으로 무단출판한 사람에게는 그 인세액인 5백만 원을 손해액으로 삼아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편, 제1항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액에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으나, 이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먼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청구하고, 그것의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최저한의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무단 복제물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권리를 직접 행사했을 경우에 권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기보다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은 추정규정으로서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적용시키기 어렵지만 제2항은 법정규정으로서 자칫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최저의 손해배상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권리행사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의 손해배상액으로 삼게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하겠다.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의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항에 의한 침해자의 이익액을 추정할 수 없고 다만 제2항에 의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출만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침해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재산권을 활용하도록 했더라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한다면 그것이 곧 초과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판권의 경우 침해자가 ‘갑’이라는 출판사라고 했을 때, 만일 훨씬 규모가 크고 유통망이 잘 갖추어진 ‘을’이라는 출판사에서 그 저작물을 출판했더라면 과거의 전례로 보아 2만 부는 팔 수 있었을 것을 ‘갑’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5천 부밖에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차이가 나는 1만5천 부만큼의 저작권사용료가 곧 초과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4항은 등록된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다. 즉, 등록된 저작권 등의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과실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자 등은 자신의 권리 내용을 반드시 등록하는 것이 향후 원만한 권리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손해배상의 청구 외에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부당이득이란, 민법 제741조에 의하면,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없는 이득”을 말하며, 이런 경우에 손실자에게는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민법 제748조에 따르면, 이득자가 그 이득에 관해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안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지만, 그 이득에 관해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는 그 이득의 현존여부에 관계없이 그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것까지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만일 동일한 사실이 두루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의 반환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권리침해의 사실이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24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23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4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우리나라 법은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방지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인권 침해와 업무상의 불이익이나 환경 악화 등의)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이다. 구제를 지원하는 기관은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무료법률 구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5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__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사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는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에 관한 조항이다.

출판권이 존용되는 현행 저작권법 제6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이처럼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계속해서 남은 출판물을 배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설정계약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소멸된 경우에 그 출판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판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만들어진 출판물을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

먼저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출판권이 소멸되었더라도 판매에 의한 방법 이든 아니든 남은 출판물을 배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약이란, 예를 들어 “출판권자는 출판권이 소멸된 이후라도 이전에 만들어진 출판물의 재고를 계속해서 판매에 의한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출판권설정계약을 하는 당시에 복제권자와 출판권자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출판권 소멸 이후의 배포가 가능하다.

또,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출판권이 소멸하기 이전에 출판권자가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3,000부 제작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복제권자에게 지급했는데 출판권이 소멸한 뒤에도 그 중 1,500부가 남았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복제권자 몰래 그 이상을 더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복제권자의 복제권은 물론 배포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특히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출판권이 소멸한 이후에 지급된 대가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6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는 ‘재해, 사고’에 대한 조항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재난에 따른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쌍방이 불가피하게 당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후속조치를 합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다.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28조 (개인정보의 취급)

- ①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에서는 을이 출판물의 제작 및 판매 촉진 활동을 함에 있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초상 이용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나 범위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을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9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다 보면 계약 내용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배려하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살피건대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30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 법원으로 한다.

제30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113조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조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114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조정 업무 및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조정(調停)’은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조정시킴으로써 ‘화해(和解)’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저작권 관련 분쟁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정업무의 중요성을 헤아릴 수 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다른 분쟁에 비해 대개 소액을 둘러싼 경우가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소송에 의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무리가 많은 까닭에 당사자끼리 화해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국내의 저작자나 이용자들은 대개 문화의식이 강한 반면에 저작권에 관한 의식은 낮은 편이며, 금전적인 문제에 앞서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드러나는 분쟁 해결보다는 은밀하고 간단한 해결 방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분쟁을 소송에 의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소송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해 조정은 비공개 상태에서 화해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다. 게다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저작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 또한 많은데, 조정을 통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정식재판에 앞서 전문기관이 화해에 의한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중재에 나선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취지에서 조정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조정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14조(조정부) ①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제114조는 저작권위원회의 조정기능을 수행할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에서는 우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안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했으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조정부 위원 중에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 이러한 조정제도는 당사자끼리의 양보를 바탕으로 법규 차원의 구속을 떠나서 조리에 맞고 실정에 맞는 해결을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재판에 의한 소송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적당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라면 더욱이 꺼림칙하기 때문에 문제를 서로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할 때 적합한 제도이다.

제2항에서는 그 밖에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60조 ‘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13) 법률상 ‘조정’이란 “법관 등 해당 분야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의 당사자 사이를 알선하여 그 주장을 서로 양보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중재 의견을 제안하여 당사자를 설득함으로써 그 합의에 따라 분쟁을 원만한 해결로 이끄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부가 조정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 법원에서 조정절차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1인 조정부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저작권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2009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1인 조정부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2020년에는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제114조의2는 ‘조정의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이다. 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신청 및 진행 절차가 신속하면서도 간편하다는 점에서의 신속성, 각 조정부는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의 전문성,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 과도한 비용이 드는 데 비해 분쟁조정은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의 경제성, 그리고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업상 또는 개인적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에서의 비공개성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제1항에서는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앞서 살핀 것처럼 조정제도란 저작권 및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조력을 통해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ADR)이다. 조정신청으로부터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는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정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법 시행령¹⁴⁾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5조는 조정업무의 비공개 원칙에 관한 규정이다. 종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체제에서는 조정절차에 대한 공개 여부가 법령이 아닌 위원회 내부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의 원활한 의견진술을 보장하여 합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민사조정법 관

14) 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이 실시되는 경우 감정기간은 제5항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련 규정¹⁵⁾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직접 비공개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도입했으며, 같은 취지에서 제3자에 대한 제한적인 방청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116조는 조정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원용제한 규정이다. 실제 조정과정에서는 자신의 진술이 나중에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을 염려하여 진술을 꺼려 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조정에서의 진술을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원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¹⁶⁾

제117조(조정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련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제117조는 조정의 성립과 성립된 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에서는 먼저 조정당사자들이 조정내용에 합의(合議)하고 그 합의된 사항을 조서(調書)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는 일”로서의 ‘합의(合意)’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떠한 사실을 토의하여 의견을 종합하는 일”이라는 뜻의 ‘합의(合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라는 당사자만의 의견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서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정부의 견해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하든지 아니면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든지 작성된 조서에 그러한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들이 서명과 날인을 하게 되면 합의가 원만하게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

15) 민사조정법 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16) 민사조정법 제23조(진술의 원용제한)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17) 일반적으로 ‘조서’란 소송절차의 경과와 내용 등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를 말하며, 이와 같은 조서는 소송절차가 방식을 준수했는지, 또한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나중에 증거가 된

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은 2020년에 신설 발효된 내용으로 이른바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그동안 조정제도는 그 실효성 및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는데, ‘직권조정결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앞으로는 조정제도가 좀 더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5항에서는 조정이 성립된 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직권조정결정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상의 화해’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절차의 한 형태로서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당사자끼리의 합의로써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재판상의 화해가 지니는 민사소송법상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에 따라 기판력(既判力)¹⁸⁾과 집행력(執行力)¹⁹⁾, 또는 형성력(形成力)²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이 성립된 후 상대방이 합의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520조에 따라 화해조서의 내용에 구체적인 의무이행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화해조서를 채무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는 화해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만 허용되므로 화해성립 이전의 사유를 가지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셋째, 화해조서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화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다면 그 상대방은 그러한 불이행을 원인으로 삼아 화해를 해제하거나 새로운 소송절차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단서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한 것은, 비록 화해조서가 작성되기는 했지만 그 내용 중에 당사자의 권능이 아닌 사항, 즉 임의처분이 불가능한 사항이 들어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합의가 아니므로 무효임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서의 권리자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대리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리인에 의한 합의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조서의 작성자, 기재사항 및 방식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조정이란 조정부를 재판부에 준한 것으로, 조정절차를 소송절차에 준한 것으로 보고 여기서도 조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며, 조정조서의 작성방법은 제117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의 ‘조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의 완전한 성립은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지 조서에 기재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다. 허희성(1988), 『新著作權法逐條概說』(서울:汎友社) pp.379~380. 참조.

18) 판결의 구속력. 즉, 확정된 재판의 판단내용이 소송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말한다.

19)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20)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취소권(取消權)·추인권(追認權)·해제권(解除權) 또는 인지권(認知權) 등의 효력에서 볼 수 있다.

- 제118조(조정비용)**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18조는 조정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이다.

우선 제1항에서는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하여 신청인 부담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청인이란 맨 처음 조정을 신청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맨 처음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일단 조정신청에 필요한 비용만을 부담하면 되고, 이후에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돌출할 수 있는 각종 업무에 드는 모든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면, 증인의 출석이라든가 증거물의 감정 등이 필요하다면 조정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따르는 비용 또한 생기게 마련인데, 그때에는 그러한 증인출석 또는 증거물 감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인이 되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 각자가 똑같이 나누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단서로 두고 있다.

제2항에서는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다.

제3항에서는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신청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되고 있는 조정비용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1백만 원 미만인 경우 1건당 10,000원
- 1백만 원 이상 ~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1건당 30,000원
-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1건당 50,000원
-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건당 100,000원
-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1건당 50,000원

※ 조정신청금액은 신청인이 신청취지에 기재한 금액으로 해당 조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금액을 말함.

(ex.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 1백만 원이 조정신청금액이 됨)

※ 피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신청인별로 신청인이 각각 청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조정비용 산정.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참고> 조정·알선·중재 제도 비교표

구분	개념	효력	시행기관
조정	중립적인 제3자적 지위를 가진 조정기구를 통해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제도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알선	알선위원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	민법상 화해와 동일	-한국저작권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재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	확정판결과 동일	-대한상사중재원 -언론중재위원회 등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2009),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p.60.

■ 특약 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특약사항

항목	내용
출판권 등록 여부	
완전원고 판단기준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검인지 부착 여부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관련 사항 위임 여부	
판면파일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	
원고의 반환 여부	
출판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끝으로, 계약서는 2통이 아닌 3통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위의 특약사항에서 출판권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경우 2통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다면 3통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서식은 다음과 같다.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 호: 등록하려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 여러 건 등록 : 총 6건)

◆ 여러 건 등록 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종류: 아래 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 신청 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⑨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흥빈당, 개인사업체: 흥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흥빈당

◆ 등록권리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배타적발행권 설정자,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등]

내방,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 인터넷 등록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등록 수수료 대비 매 건당 10,000원이 감액됩니다.

※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동일인에게 설정·이전 등 변동이 되어야 하며, 그 설정·이전 등의 등록 사항은 그 사항별로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연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처,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仪,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약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참고> 저작권 등록 방법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1) 공동권리자의 저작권 등록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재산권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인이 나머지 권리자의 위임을 받아 대표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등록신청의 경우 공동권리자 중 1인인 신청인은 신청과정에서 공동권리자 전원의 정보를 입력하여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단독신청승낙서의 제출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제출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된 공동권리자 중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온라인등록시스템 첨부서류 메뉴에 접속하여 단독신청승낙에 인증해야 한다. 한편 제출방법을 내방 또는 우편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서식 중 공동권리자목록을 다운받아 공동권리자 전원이 인적정보를 기재, 서명한 후 이를 저작권위원회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하면 된다.

내방 또는 우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 중 공동권리자 목록을 다운받아 공동권리자 전원의 정보를 작성, 각자 서명한 후 이를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 시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2) 외국인의 저작권 등록

국제협약 등의 가입국 국민으로서 상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이 보호되는 외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도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서류 일체를 국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첨부서류는 국문으로 번역한 번역본을 공증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신청인인 외국인의 신분과 서명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정증명서, 여권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등록신청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거소신고증의 사본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신분증명서류로 하면 된다.

(3) 미성년자의 저작권 등록

미성년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허위등록으로 인한 처벌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등록신청승낙서와 친권자 등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사본 등)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²¹⁾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_____과(와) 이를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발행사'라고 함) _____는 (은)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자 및 발행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는 전자출판에 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내용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과는 다르다. 저작물의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당연히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생긴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1) 저작재산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발행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5.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7.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8.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9. 전자책(e-Book) : PC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저장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특정 포맷으로 제작된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10.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MP3 플레이어 외에도 휴대전화,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노트북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11.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2.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이다.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관련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하여 뜻을 풀었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발행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전자책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3조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57조에서는 다음과 같다.

-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설정’이란 쌍방 간의 계약에 따라 새로이 제한적인 물권 따위의 배타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배타적발행권 역시 그러한 설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제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는 우선 용어에 대한 뜻을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발행’이라는 말은 정의 규정에서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나, 여기서는 ‘발행 등’이라고 하여 ‘복제·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제·전송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출판권’은 여기서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것—을 제외한 복제·배포 및 복제·전송하는 것을 모두 지칭하는 권리 개념이 되는 셈이다.

한편, 출판권에 해당하는 복제란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한정되므로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한 복제와 더불어 복제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이 선보이고 있는 비종이책, 즉 오디오북 또는 전자책(e-Book) 등이 배타적발행권의 대상이 된다.

제2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곧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라는 것이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조건이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경우마다 모두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이용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배타적발행권자라 하더라도 허락 받은 방법 및 조건 한도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 방법 및 조건이 뜻하는 범주가 애매하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전자책(e-Book)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솔루션²²⁾ 등 기술적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그것이 구현되는 디바이스²³⁾와 유통 플랫폼²⁴⁾도 다양한 상황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점이 대두된다.

제3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발행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라는 것이다.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라는 것은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배타적발행

22) 솔루션(solution) : 사용자 요구에 적합하면서 특정한 형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응용프로그램과 연계된 문제를 처리해 주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솔루션은 사용자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파일형식, 회사, 상표명, 운영체제 등을 일일이 구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23) 디바이스(device) :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된 기계나 장치를 의미하며, 주변장치라고도 한다. 컴퓨터 기술상 디바이스는 컴퓨터의 케이스나 하우징의 안팎에 있는 하드웨어의 일종으로, 컴퓨터에 어떠한 입력을 제공하거나, 컴퓨터로부터 출력을 제공받거나 또는 둘 다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24) 플랫폼(platform) :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메인프레임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이며, MS-DOS나 윈도 ME, UNIX 등의 운영체제는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이제 컴퓨터뿐 아니라 각종 게임이나 PDA 등에 이르기까지 기반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로 폭넓게 쓰이고 있다. 하나의 플랫폼은 운영체제, 컴퓨터 시스템의 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마이크로프로세서, 논리연산을 수행하고 컴퓨터 내의 데이터 이동을 관장하는 마이크로칩 등으로 구성된다. 과거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특정 플랫폼에서만 운용되도록 개발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플랫폼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권을 설정하는 계약행위에 따라 만들어진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뜻한다. 따라서 복제·배포 또는 복제·전송의 시기, 방법, 발행 등의 횟수, 저작권사용료 조건 등이 그것이며, 배타적발행권자는 그러한 내용대로만 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5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저작물의 수정·증감,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등과 관련하여 또 다른 약정사항도 설정행위로 정할 수 있다.

제4항에서는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저작재산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저작재산권자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작권등록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은 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정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는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한 조항이다. 배타적발행권도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배타적발행권 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²⁵⁾ 곧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이용자와 이중으로 똑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배타적발행권 등록은 배타적발행권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이다.²⁶⁾ 계약서 말미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제5조 (배타적 이용)

25)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26) 저작권법 시행령 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① 발행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위 저작물의 전자책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전자책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는 배타적발행권자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제1항에서는 발행사에게 배타적발행에 따른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출판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용 과정에서 오자(誤字) 또는 탈자(脫字)나 한글맞춤법 또는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잡는 일은 가능하지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가 변하는 것, 즉 번역이나 개작에 의한 배타적발행 행위는 별도의 설정행위가 없는 한 불가능하므로 저작인격권자인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2항에서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이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발행 등에 이용되는 저작물이 장편소설처럼 일부분의 이용만으로는 발행물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만일 발행 등의 목적인 '위 저작물'이 '시집' 또는 '소설집'과 같이 '일부'의 이용만으로도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로 약정하여도 무방하다. 아울러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도 특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6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 ① 발행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전자책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____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_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___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는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제59조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 ①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곧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과 저작물의 분리 이용에 따른 예외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에서는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배타적발행

권이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설정행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와 일방적인 배타적발행권자의 욕심 때문에 그 존속기간이 무한대로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은 3년이 된다. 저작권 산권 자체가 길어야 저작자 사후 70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기한의 배타적발행권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런 경우에도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배타적발행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은 설정계약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므로 그 계약에서 유효기간이 끝났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서로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유효기간이 갱신된다고 정했다면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역시 갱신된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저작재산권자와 합의하여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무조건 긴 존속기간만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훨씬 단축된 존속기간으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어문저작물 등을 영화 등과 같은 영상저작물로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길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금액 또한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다는 취지에 따른 규정이다.

제2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또는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전집 또는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는 것은 고인을 추모할 목적으로 퍼내는 개인전집 또는 추모문집이나 영상물, 전송물 등을 가리키며, 원래 저작물 자체가 전집 또는 편집물이었다면 그 중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 추모단행본을 퍼내거나 영상물 또는 전송물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고인을 추모할 목적이라는 인지상정의 결과여야 하며, 배타적발행권 설정 당시 적시된 이용 방법에 따른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심각한 시장잠식 같은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제4조 1항에서는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적당한 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제6조 제2항은 해지 통고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저작재산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미리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쌍방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계약 조건으로 갱신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 시한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내용이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한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같은 계약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출판권 설정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발행사가 자동 연장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자동 연장 이전까지 발생한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동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더 이상 계약 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 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은 종료된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

- ① 저작권자는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위 저작물의 발행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판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위 저작물의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는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권법 제58조에 따르면 ‘언제까지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없는 한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이라고 한 것은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완전원고’라는 말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저작물 작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완전원고 인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항에서 말하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의 ‘이용’은 단순한 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제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여 유통의 상태에 두는 것, 즉 이용자들이 전자책 등을 구입해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이라고 했으므로 특약에 의해, 즉 설정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설정행위로서 결정된 기간은 나중에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설정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욕심을 부려 이와 같은 의무조항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예를 들어,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배타적발행권자의 형편에 따라 아무 때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라든가, “한 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용할 의무가 없다”라는 식의 내용—은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아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정된 기간 내의 출판 이전에 저작자로부터 원고가 약정된 기일 안에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인도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이용권자의 원고독촉에도 불구하고 기일 안에 원고가 인도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 그것은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인도’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긴 때문일 것이다.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는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창작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자 등에게도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완전한 저작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후 판매 촉진 활동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다.

2항에서는 발행사에 부과되는 고지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계약의 완전성을 얻고자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는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제11조부터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는 한편,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9조 해설 참조)

제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는 ‘교정’에 관한 조항이다.

제9조에서 살핀 것처럼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정 책임은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값이 저작자가 아닌 단순한 저작재산권자인 경우에는 저작자와의 확인 과정을 값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스스로 교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그 과정을 전문 편집자 등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출판사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수행된 교정 및 교열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작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11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

① 저작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사가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하거나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 ②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한다.
- ③ 맨 처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는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²⁷⁾ 이는 저작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까닭에 저작재산권자 또는 복제권자라고 하지 않고 ‘저작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을 다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작물을 다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란 이용조건인 범위 안에서 전자책(e-Book)의 포맷을 다르게 한다거나 솔루션 또는 디바이스를 바꾸는 등 —출판에서 중쇄(重刷) 혹은 중판(重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물에 수정이나 증감을 해도 배타적발행권자에게 별 다른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 역시 무조건적인 저작자의 의사에 의한 수정·증감이 아닌 합리적인 수정 또는 증감을 나타낸다. 즉, 저작물을 과도하게 수정하거나 증감함으로써 배타적발행권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그 제작공정에 많은 변동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정 또는 증감이라고 할 수 없다.

제1항은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 부분은 저작물의 성질, 배타적발행권자의 부담 정도, 그리고 업계의 관행 등을 참작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저작자의 과도한 수정·증감으로 배타적발행권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반대로 저작자의 정당한 수정 또는 증감 요구를 배타적발행권자가 묵살함으로써 저작자가 입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배상 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제2항에서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완전원고로서의 저작물을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그것을 배타적발행물로 제작하고 홍보하여 판매에 이르는 데에 드는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일 제작사에서 그것의 기획 과정을 전부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정 저작자에게 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작에 필요한 비용까지 제작사가 부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른바 ‘자비(自費) 발행’ 등의 경우에는 저작 및 발행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저작권자가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이라면 2항의 규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또, 제3항은 1항에서 우려되는 부분, 즉 값이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증감함으로써 배타적발행권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제작공정에 많은 변동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값의 부담액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27) 저작권법 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따라서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3항을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특약사항으로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비용 부담 내역 또는 금액의 수준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12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다운로드 방식() , 구독 방식() / 오프라인-유형물 제작()]
- 매체 형식 : [전자책() / 오디오북() / 기타 _____]
- 이용 형식 : [솔루션 _____ / 디바이스 _____ / 플랫폼 _____]
- 정가 : 회당 / 1set / 기타 _____원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발행사는 발행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는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한 조항이다.

먼저 제1항에서는 발행 등에 따른 이용조건 및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복제 유형을 비롯하여 매체 형식, 이용 형식, 정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또 다른 이용 방식이 있다면 서로 협의하여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항은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책 제작 및 유통업계의 관행은 위의 제9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한다”는 원칙의 취지에 따라 전송물 등에 대한 이용료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배타적발행권자가 소신껏 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자기 저작물에 대한 자존감이나 소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행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저작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에서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3항에서는 전송물 등을 홍보 및 광고하는 과정에서 과장 및 허위광고로 인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13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매출액이 _____원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는 ‘계속 발행 등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배타적발행권자에게는 ‘의무’가 부과된다²⁸⁾. 그 중에 “특약이 없는 한 관

28) 저작권법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

행에 따라 계속해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배타적발행권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항상 시중의 유통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구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적어도 품질(品切)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관행에 따라”라는 표현은 배타적발행권자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만일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배타적발행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어떤 상품이 출시된 이후 아무리 홍보에 치중해도 구매율이 저조하여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관리비용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품질시킬 수밖에 없는데도 이 조항 때문에 계속해서 발행 등을 해야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6개월 동안 매출액이 일정 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은 이용자들의 구매 욕구가 매우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더 이상 발행물을 유통시키지 않는 등의 악의적인 상황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계속 발행 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14조 (저작권사용료 등)

- ①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 매출액의 ____%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 ② 발행사는 ____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발행사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직전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이 산정되었음을 발행사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4조는 ‘저작권사용료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저작권사용료, 즉 저작물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용권자로부터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금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유형물(도서)에 매겨진 가격(정가)의 일정한 비율로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따라 계산되는 출판물과는 달리 이용 방식에 따라 가격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출판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간에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저작권사용료의 비율과 지불 방법을 놓고, 또는 이미 정해진 계약내용을 놓고 저작재산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 사이에 상당한 진통을 겪거나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이용방식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제2항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매출 현황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동시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 산정 기준이 된 매출액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양자 모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전체 저작권사용료를 벗어나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선급금)

- ①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__ 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_____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 ②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는 ‘선급금’에 관한 조항이다.

이는 계약에 관한 신뢰를 높일 목적으로 지불되는 일종의 계약금이며, 다만, 저작권사용료를 미리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될 저작권사용료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제16조 (저작권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는 ‘저작권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45조 1항에서는 저작권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저작권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제62조 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권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저작권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배타적발행권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타적발행권자가 갑으로부터 획득한 권리(배타적발행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제1항에서는 그럼에도 만일 저작권재산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준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도의(商道義)에 입각하여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만일 배타적발행권자가 자신의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

- ①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행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이하 ‘발행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발행사에게 귀속된다.
-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발행사의 문서에 의한 승낙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발행사의 발행데이터를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발행사로부터 발행데이터 파일을 구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발행데이터의 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

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는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조항이다.

원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이용허락을 얻어 전송물(다운로드 방식의 전자책, 오디오북 등) 또는 기타 발행물(CD 형식의 전자책 또는 오디오북 등)로 제작하려면 그 과정에서 최초 원고에 대한 교정·교열 및 디자인이 반영된 발행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대개 제작사의 인적·물적 투자에 의한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 소유권은 저작재산권자가 아니라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있게 마련이다.

제1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발행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는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저작권과 어울려 배타적발행물로서 이용자들에게 판매의 방법으로 제공될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발행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저작권이 분리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데이터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배타적발행권이 미치지 않는(이용조건과 방식이 다른)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제작한 발행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훨씬 수준 높은 전송물 등을 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2항은 바로 그런 경우에 있어 만일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발행권이 미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 배타적발행권자가 제작한 발행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제3항에서는 그런 경우 발행데이터 구매에 따른 비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서 굳이 계약서 조문으로 넣지 않아도 되지만, 상호 계약 사항 준수를 촉구하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규정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작성된 계약 내용을 어느 일방이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즉시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미래의 발전적 관계 설정에도 그리 좋은 처사는 아닐 것이다. 다만,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도 양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제1항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일정기간 안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제2항에서는 1항과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계약 이행을 기피한다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조치로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3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서 더 이상 발행 등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

그런데 법률 효과 측면에서 보면 ‘해지(解止)’와 ‘해제(解除)’는 큰 차이가 있다. 현행 민법 제550조에서는 ‘해지의 효과’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해제’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곧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의 발생사유로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해지권을 인정하지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해지권을 인정했으며,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었거나, 계약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이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 등에 해지권을 인정했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 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따라서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23조 해설 참조)

제20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0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우리나라 법은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방지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인권 침해와 업무상의 불이익이나 환경 악화 등의)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이다. 구제를 지원하는 기관은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무료법률 구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1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유형물을 __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사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는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에 관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6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면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계속해서 남은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설정계약의 규정에 따라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소멸된 경우에 그 배타적발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만들어진 복제물을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

먼저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매에 의한 방법이란 아니든 남은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약이란, 예를 들어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이후라도 이전에 만들어진 복제물의 재고를 계속해서 판매에 의한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하는 당시에 저작재산권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배타적발행권 소멸 이후의 배포가 가능하다.

또,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에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하기 이전에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3,000매 제작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했는데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뒤에도 그 중 1,500매가 남았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자 몰래 그 이상을 더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은 물론 배포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특히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이후에 지급된 대가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출판권과 다른 점은 출판의 경우에는 ‘복제물’이라는 개념이 부합하지만 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는 ‘복제물’이란 유형물로서의 CD 또는 DVD 같은 것이어서, 전송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1항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보다 엄격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쌍방이 모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계약기간 동안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남은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전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이를 어기는 경우 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갑과 을은 서로를

배려하여 약정기간을 넉넉하게 설정하는 등의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배타적발행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 지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는 ‘재해, 사고’에 대한 조항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재난에 따른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쌍방이 불가피하게 당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후속조치를 합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다.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다.

제24조 (개인정보의 취급)

-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 등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2항에서는 을이 발행물의 제작 및 판매 촉진 활동을 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초상 이용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나 범위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5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다 보면 계약 내용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배려하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 법원으로 한다.

제26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113조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조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114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조정 업무 및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조정(調停)’은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조정시킴으로써 ‘화해(和解)’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저작권 관련 분쟁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정업무의 중요성을 헤아릴 수 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다른 분쟁에 비해 대개 소액을 둘러싼 경우가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소송에 의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무리가 많은 까닭에 당사자끼리 화해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분쟁을 소송에 의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소송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해 조정은 비공개 상태에서 화해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저작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 또한 많은데, 조정을 통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정식재판에 앞서 전문기관이 화해에 의한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중재에 나선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취지에서 저작권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각종 권리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정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30조 해설 참조)

■ 특약 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

이 좋겠다.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특약 사항

항목	내용
배타적발행권 등록 여부	
완전원고 판단기준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검인지 부착 여부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관련 사항 위임 여부	
발행데이터 원본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	
원고의 반환 여부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배타적발행권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끝으로, 계약서는 2통이 아닌 3통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위의 특약사항에서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경우 2통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다면 3통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자세한 등록 절차 및 서식에 대해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해설 참조)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²⁹⁾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_____과(와) 이를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거나 종이책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발행사'라고 함) _____는(은)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및 종이책 발행을 위한 출판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자 및 발행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에서는 이 계약서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살핀 것처럼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내용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출판권 설정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둘 다 저작물의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까지 생긴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9) 저작재산권자가 전자책 및 종이책을 동시에 제작하기 위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설정하고, 발행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전송하거나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 발행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5.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7. 출판권 : 출판사가 저작권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8.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9.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10. 전자책(e-Book) : PC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저장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특정 포맷으로 제작된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1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3.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이다.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관련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발행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설정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3조는 설정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서 ‘설정(設定)’이란 쌍방의 계약에 의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역시 설정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5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의 우선 용어에 대한 뜻을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발행’이라는 말은 정의 규정에서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나, 여기서의 ‘발행 등’이라고 하여 ‘복제·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제·전송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출판권’은 여기서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것—을 제외한 복제·배포 및 복제·전송하는 것을 모두 지칭하는 권리 개념이 되는 셈이다.

출판권에 해당하는 복제란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한정되므로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한 복제와 더불어 복제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이 선보이고 있는 비종이책, 즉 오디오북 또는 전자책 등은 모두 배타적발행권의 대상이 된다.

제2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곧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라는 것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조건이 다양한데, 이러한 경우마다 모두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이용자들 사이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배타적발행권자라 하더라도 허락 받은 방법 및 조건 한도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 방법 및 조건이 뜻하는 범주가 애매하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전자책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솔루션 등 기술적 방법이 다양하고, 그것이 구현되는 디바이스와 유통 플랫폼도 다양한 상황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점이 대두된다.

제3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발행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라는 것이다.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라는 것은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계약행위에 따라 만들어진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뜻한다. 따라서 복제·배포 또는 복제·전송의 시기, 방법, 발행 등의 횟수, 저작권사용료 조건 등이 그것이며, 배타적발행권자는 그러한 내용대로만 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5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저작물의 수정·증감,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등과 관련하여 또 다른 약정사항도 설정행위로 정할 수 있다.

제4항에서는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저작재산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저작재산권자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작권등록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은 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정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의 등록)

-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등록’에 관한 조항이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도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³⁰⁾ 곧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이용자와 이종으로 똑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설정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발행이나 출판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등록은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행 및 출판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이다.³¹⁾ 계약서 말미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다.

제5조 (배타적 이용)

- ① 발행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위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과 저작물을 전자책 등으로 복제·배포하는 것과 복제·전송하는 것(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전자책 또는 종이책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는 배타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제1항에서는 배타적 발행 및 출판에 대해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용 과정에서 오자(誤字) 또는 탈자(脫字)나 한글맞춤법 또는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잡는 일은 가능하지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가 변하는 것, 즉 번역이나 개작에 의한 배타적 발행 및 출판 행위는 별도의 설정 행위가 없는 한 불가능하므로 저작인격권자인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0)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31)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이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배타적 발행 및 출판 등에 이용되는 저작물이 장편소설처럼 일부분의 이용만으로는 발행물 및 출판물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만일 배타적 발행 및 출판 등의 목적인 ‘위 저작물’이 ‘시집’ 또는 ‘소설집’과 같이 ‘일부’의 이용만으로도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로 약정하여도 무방하다. 아울러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도 특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6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존속기간)

- ① 발행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_____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__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____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 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는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경우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존속한다. 여기서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고 했으므로 제1항에서와 같이 양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한다.

아울러 이러한 권리는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저작재산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재고 등을 이유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제2항에서처럼 미리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쌍방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계약 조건으로 갱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한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같은 계약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동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더 이상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 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은 종료된다.

제4항에서는 제2항에 의한 해지 통고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자동 연장될 수도 있다는 규정에 대해 발행사(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

- ① 저작권자는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위 저작물의 발행 등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_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특약이 없는 경우 9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위 저작물의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는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는 저작권법 제58조에 따라 ‘언제까지 발행 및 출판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없는 한,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이라고 한 것은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완전원고’라는 말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저작물 작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완전원고 인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항에서 말하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월 내에 위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의 ‘이용’은 단순한 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제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여 유통의 상태에 두는 것, 즉 이용자들이 구입해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이라고 했으므로 특약에 의해, 즉 설정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설정행위로서 결정된 기간은 나중에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의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설정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의무조항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예를 들어,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배타적발행권자의 형편에 따라 아무 때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라든가, “한 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용할 의무가 없다”라는 식의 내용—은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보아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정된 기간 내의 발행 이전에 저작자로부터 원고가 약정된 기일 안에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인도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이용권자의 원고독촉에도 불구하고 기일 안에 원고가 인도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 그것은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인도’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긴 때문일 것이다.

제3항은 ‘원고(원화)의 반환’에 관한 조항이다. 근래 들어 대부분의 문자 또는 이미지 원고는 이메일 등을 통한 전송 형식으로 주고받는다든가 점에서 실무상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송이 아닌 면대면 상황에서 직접 주고받은 육필원고 또는 원화(原畵) 등과 같은 실물원고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보존적 가치를 고려하여 추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원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때그때 상호 협의해서 그 내용을 결정하면 된다.

제4항에서는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는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창작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자 등에게도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에게 완전한 저작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후 판매 촉진 활동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2항에서는 고지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발행사 및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계약의 완전성을 얻고자 하려는 취지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인쇄 방식에 의한 발행물에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제9조는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제11조부터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는 한편,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9조 해설 참조)

제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는 ‘교정’에 관한 조항이다.

제9조에서 살핀 것처럼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정 책임은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저작자가 아닌 단순한 저작재산권자인 경우에는 저작자와의 확인 과정을 같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스스로 교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그 과정을 전문 편집자 등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사업자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수행된 교정 및 교열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작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11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

- ① 저작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사가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하

거나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 ②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한다.
- ③ 맨 처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는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제58조의2를 준용하면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은 이미 살핀 바와 같다. 이는 저작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까닭에 저작재산권자 또는 복제권자라고 하지 않고 ‘저작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을 다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작물을 다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란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전자책(e-Book)의 포맷을 다르게 한다거나 솔루션 또는 디바이스를 바꾸는 등—출판에서 중쇄(重刷) 혹은 중판(重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물에 수정이나 증감을 해도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에게 별 다른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 역시 무조건적인 저작자의 의사에 의한 수정·증감이 아닌 합리적인 수정 또는 증감을 나타낸다. 즉, 저작물을 과도하게 수정하거나 증감함으로써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그 제작공정에 많은 변동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정 또는 증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작물의 성질,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의 부담 정도, 그리고 업계의 관행 등을 참작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저작자의 과도한 수정·증감으로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반대로 저작자의 정당한 수정 또는 증감 요구를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가 묵살함으로써 저작자가 입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배상 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제2항에서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완전원고로서의 저작물을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그것을 배타적발행물 및 출판물로 제작하고 홍보하여 판매에 이르는 데에 드는 비용은 발행권자 및 출판권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일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가 기획 과정을 전부 진행하는 경우 특정 저작자에게 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가 저작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른바 ‘자비발행’ 등의 경우에는 저작 및 발행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저작권자가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이라면 2항의 규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또, 제3항은 1항에서 우려되는 부분, 즉 저작자가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증감함으로써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로 하여금 발행 및 출판의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제작공정에 많은 변동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부담액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3항을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

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특약사항으로 금액의 수준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12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출판을 제외한다)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복제 유형 : [온라인-다운로드 방식(), 구독 방식() / 오프라인-유형물 제작()]

□매체 형식 : [전자책() / 오디오북() / 기타 _____]

□이용 형식 : [솔루션 _____ / 디바이스 _____ / 플랫폼 _____]

□정가 : 회당 / 1set / 기타 _____ 원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발행사는 발행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는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조항이다.

먼저 제1항에서는 발행 등에 따른 이용조건 및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복제 유형을 비롯하여 매체 형식, 이용 형식, 정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또 다른 이용 방식이 있다면 서로 협의하여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항은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책 제작 및 유통업계의 관행은 위의 제9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 및 출판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의 취지에 따라 전송물 등에 대한 이용료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배타적발행권자가 소신껏 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자기 저작물에 대한 자존감이나 소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행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저작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3항에서는 전송물 등을 홍보 및 광고하는 과정에서 과장 및 허위광고로 인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13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매출액이 _____ 원 이하 또는 6개월 동안 판매량이 _____ 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는 ‘계속 발행 등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항상 시중의 유통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구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적어도 품질(品切)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관행에 따라”라는 표현은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만일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어떤 상품이 출시된 이후 아무리 홍보에 치중해도 구매율이 저조하여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관리비용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품질시킬 수밖에 없는데도 이 조항

때문에 계속해서 발행 등을 해야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6개월 동안 매출액이 일정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판매량이 일정 부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14조 (저작권사용료 등)

- ① 발행사는 출판물 이외의 발행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 매출액의 _____%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 ② 발행사는 출판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기타 _____

- ③ 발행사는 _____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발행부수 및 판매부수를 포함한다)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출액 산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발행사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__%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행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는 ‘저작권사용료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저작권사용료, 즉 저작물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용권자로부터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금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유형물(도서)에 매겨진 가격(정가)의 일정한 비율로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따라 계산되는 출판물 이외의 발행물은 이용 방식에 따라 가격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저작권사용료의 비율과 지불 방법을 놓고, 또는 이미 정해진 계약 내용을 놓고 저작재산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 사이에 상당한 진통을 겪거나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이용 방식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제2항에서는 구체적인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매출 현황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동시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 산정 기준이 된 매출액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양자 모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전체 저작권사용료를 벗어나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제4항은 저작권사용료 면제 상황에 대한 조항이다. 발행부수 기준의 저작권사용료 지불방법

이라 하더라도 납본을 포함하여 신간 안내, 서평, 그 밖의 각종 홍보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부수는 전체 발행부수에서 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렇더라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부수를 초과하는 것은 곤란하며, 공제 부수의 활용 내역을 알려주는 일 또한 출판사의 당연한 도리라고 할 것이다.

제15조 (선금금)

- ①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__영업일 이내에 선금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 ②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금금을 공제한다.

제15조는 ‘선금금’에 관한 조항이다. 이는 계약에 관한 신뢰를 높일 목적으로 지불되는 일종의 계약금이며, 다만, 저작권사용료를 미리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될 저작권사용료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제16조 (저작권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양도 등)

-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는 ‘저작권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양도 등’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저작권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저작권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출판권이 준용되는 제62조 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권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저작권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배타적발행권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권재산권자로부터 획득한 권리(배타적발행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제1항에서는 그럼에도 만일 저작권재산권자가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에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설정해준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도이에 입각하여 사전에 이를 배타적 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만일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가 자신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재산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17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

- ①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행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판면파일을 포함하며, 이하 ‘발행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발행사에게 귀속된다.
-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발행사의 문서에 의한 승낙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발행사의 발행데이

터를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발행사로부터 발행데이터 파일을 구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발행데이터의 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는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조항이다.

원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이용허락을 얻어 편집디자인을 거쳐 출판물을 만들거나 전송물(다운로드 방식의 전자책, 오디오북 등) 또는 기타 발행물(CD 형식의 전자책 또는 오디오북 등)로 제작하려면 그 과정에서 최초 원고에 대한 교정·교열 및 디자인이 반영된 발행데이터(판면파일 포함)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대개 제작사의 인적·물적 투자에 의한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 소유권은 저작재산권자가 아닌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있게 마련이다.

제1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발행데이터 및 판면파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는 배타적 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저작권과 어울려 발행물로서 이용자들에게 판매의 방법으로 제공될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발행데이터 및 판면파일에 대한 권리와 저작권이 분리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데이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미치지 않는(이용조건과 방식이 다른)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데이터 및 판면파일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수준 높은 전송물 등을 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2항은 바로 그런 경우에 있어 만일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미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가 제작한 발행데이터 및 판면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를 담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그런 경우 발행데이터 매수에 따른 비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특약 사항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서 굳이 계약서 조문으로 넣지 않아도 되지만, 상호 계약 사항 준수를 촉구하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규정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작성된 계약 내용을 어느 일방이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즉시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미래의 발전적 관계 설정에도 그리 좋은 처사는 아닐 것이다. 다만,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도 양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제1항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일정기간 안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게 했다.

제2항에서는 1항과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계약 이행을 기피한다면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조치로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3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서 더 이상 발행 등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

아울러 제4항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 23조 해설 참조)

제20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0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우리나라 법은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방지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인권 침해와 업무상의 불이익이나 환경 악화 등의)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이다. 구제를 지원하는 기관은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무료법률 구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1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 ①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유형물을 _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사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에 관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출판권이 준용되는 저작권법 제6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계속해서 남은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설정계약의 규정에 따라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소멸된 경우에 그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만들어진 복제물을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

먼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판매에 의한 방법یدن 아니든 남은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약이란, 예를 들어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된 이후라도 이전에 만들어진 복제물의 재고를 계속해서 판매에 의한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을 하는 당시에 저작재산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소멸 이후의 배포가 가능하다.

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하기 이전에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가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3,000매 제작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했는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한 뒤에도 그 중 1,500매가 남았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자 몰래 그 이상을 더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은 물론 배포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특히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한 이후에 지급된 대가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출판권과 다른 점은 출판의 경우에는 ‘복제물’이라는 개념이 부합하지만 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는 ‘복제물’이란 유형물로서의 CD 또는 DVD 같은 것이어서, 전송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문의 제목을 단순히 ‘배포’라고 하지 않고 ‘배포 및 전송’이라고 한 것이다.

제1항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보다 엄격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쌍방이 모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계약기간 동안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남은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전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이를 어기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를 배려하여 약정기간을 넉넉하게 설정하는 등의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배타적발행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 지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는 ‘재해, 사고’에 대한 조항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재난에 따른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쌍방이 불가피하게 당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후속조치를 합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다.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다.

제24조 (개인정보의 취급)

-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 등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2항에서는 을이 발행물의 제작 및 판매 촉진 활동을 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초상 이용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나 범위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을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5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다 보면 계약 내용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배려하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 법원으로 한다.

제26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113조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조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114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조정 업무 및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조정(調停)’은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조정시킴으로써 ‘화해(和解)’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저작권 관련 분쟁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정업무의 중요성을 헤아릴 수 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다른 분쟁에 비해 대개 소액을 둘러싼 경우가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소송에 의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무리가 많은 까닭에 당사자끼리 화해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분쟁을 소송에 의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소송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해 조정은 비공개 상태에서 화해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저작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 또한 많은데, 조정을 통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정식재판에 앞서 전문기관이 화해에 의한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중재에 나선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취지에서 저작권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각종 권리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정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30조 해설 참조)

■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특약사항

항목	내용
배타적발행권 등록 여부	
완전원고 판단기준	
검인지 부착 여부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관련 사항 위임 여부	
발행데이터 원본 구매 청구에 관한 사항	
원고의 반환 여부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끝으로, 계약서는 2통이 아닌 3통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위의 특약사항에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경우 2통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다면 3통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1통의 계약서로 동시에 설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설정의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등록 절차 및 서식에 대해서는 ‘출판권설정계약서’ 해설 참조)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³²⁾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	
저작물의 내용 개요 : _____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함)의 저작재산권자 _____과(와)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양수인'이라고 함) _____는(은)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달리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이들이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자'(著作者)란 곧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사실상의 저작행위를 함으로써 저작물을 창작해 낸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법인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작물에는 원저작물(1차적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자 또한 저작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저작행위를 한 사람과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을 수도 있지만 양도 또는 상속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전체 또는 부분적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자 사망 후 70년 동안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므로 그럴 경우에는 일정 권리를 양도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저작재산권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 저작물의 저작자는 1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2인 이상의 사상이나 감정이 하나가 되어 구체화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창

32)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과 관련된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공중송신은 물론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저작재산권의 일부인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복제·배포권 양도계약'의 유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주요 권리가 양수인에게 양도됨으로써 양수인은 출판 및 배타적발행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 형태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자(저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와 이를 양도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 사이에 활용될 수 있는 계약이다. 하지만 '공표권'을 제외한 저작인격권, 즉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이 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작한 사람 모두가 저작자가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저작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저작자 등의 추정’(제8조)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제9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및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목적이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정하고자 하는 계약임을 밝히고 있는 규정이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재산권 양도 :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전부 양도의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3.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되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된 저작물이다. 원저작물의 내용은 유지한 채 표현을 변형하고 그 변형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4.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5.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관련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다.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 <별표>에 해당하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특약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별표>

저작재산권의 유형	포함 여부 (○ 또는 ×)	범위(일부 또는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제3조는 ‘저작권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재산권은 저작권자에게 주어진 재산적 권리이므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시간적 제한에 따라 소멸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문화적 산물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건 등에 있어서의 소유권과는 차이가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의 특성에 입각하여 재산권 부분을 권리자가 행사함에 있어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규율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45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45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 ① 저작권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일반적인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권리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상대로 다양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그 중에서도 저작권재산권의 양도(讓渡, assignment)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 양도란 법적으로 “자기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을 뜻한다.

제1항에서는 먼저 저작권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물권적 소유권의 경우 그것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양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재산권은 다르다. 저작권재산권 자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과 별 차이가 없지만,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작권재산권만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저작권재산권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권리 또한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재산권으로서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각각 별개의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자는 당연히 이용형태에 따라 권리를 분할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별개의 재산적 권리조차도 쪼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복제권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저작권재산권자는 인쇄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출판사업자와 녹음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음반사업자, 또는 녹화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영상사업자 등에게 복제권을 각각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 즉, 어떤 방법으로 복제하느냐에 따라 같은 복제권이라도 완전한 별개의 권리로 쪼개질 수 있다는 가분적(可分的)인 특성이 저작권재산권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재산권자는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종이책의 형태로 출판사에 출판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공중송신권을 발휘하여 또 다른 업체 혹은 개인에게 전송방식에 의한 ‘전자책(e-Book)’을 만들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한 재산권의 분할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장편소설의 저작자가 있다면 그는 그것을 원작으로 하는 번역은 물론 각색하여 공연에 이용하거나 영상제작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각각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나아가 같은 공연이라도 공연의 주체가 달라진다면 그들에게도 별도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적·공간적 제한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분할 및 양도를 생각할 수도 있다. 먼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즉 ‘3년’ 또는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원래의 권리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3년’ 또는 ‘5년’ 동안의 배타적 이용허락과 같다. 공간적 측면에서 본다면, 번역에 의해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그것을 ‘한국 내에서만’ 또는 ‘일본 내에서만’ 하는 식으로 제한해서 양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포권의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역이 바뀔 때마다 각각 별개의 권리가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지역적 제한이 국내에서도 가능하여 ‘충청남도’ 또는 ‘전라남도’ 하는 식으로까지 분할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약이 없을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도 포함한 전부를 양도한다.”는 권리자의 명백한 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고 양도하는 사람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2항의 규정은 저작재산권자의 장래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은 대개가 저작재산권자로서는 매우 불리한 경우가 많을 것이며,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려는 측의 일방적인 계약내용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가난한 소설가가 한 순간의 경제적 궁핍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동안 써 놓은 어떤 작품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 상당액의 금전적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소설가는 앞뒤 가릴 겨를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랬을 때 저작재산권의 전부에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로 소설가는 그 작품에 대한 아무런 재산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대등한 상황에서의 계약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는 계약임을 잘 알고 있거나 금전적 대가가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라면 여기서의 추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추정’이란 언제든지 확실한 증거에 의해 번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하는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도 포함되는 양도임을 특약으로서 분명히 한다면 제45조 제2항의 적용을 피할 수 있으며, 단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체의 재산적 권리’라는 표현만으로 양도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거꾸로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규정했던 개작권 또는 번역권에 해당하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에서는 이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포섭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규정했던 ‘개작’이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 저작물과 달리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배경에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자리잡고 있다. 즉,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양도에 있어 양수인은 양도 받은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양수인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곧 개작권 없는 프로그램 양도는 무의

미하므로, 프로그램 저작권 전부를 양도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가 담긴 규정이다.³³⁾

결국 표준계약서로서의 저작권 양도계약서에서는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려 먼저 양도되는 저작권의 내용을 확정하고, 나아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는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4조 (저작권의 양도 등록)

- ① 저작권법에 따라 양수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는 ‘저작권의 양도 등록’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 양도 사실도 등록의 대상이 되며,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³⁴⁾ 곧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과 이종으로 같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저작권 양도 사실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저작권 양도 등록은 저작권 양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수한 저작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저작권 양도 사실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이다.³⁵⁾ 계약서 말미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다.

제5조 (저작권자의 의무)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저작권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양도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위의 제4조에서 살핀 바와 같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저작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아울러 저작권을 양

33)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09),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p.35.

34)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35) 저작권법 시행령 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관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더 이상 해당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5조의 내용은 매우 당연한 내용이지만 양도인(저작재산권자)에 대한 확실한 주의 환기를 위해 상징적으로 포함시킨 조문이다.

제6조 (양도 유효기간 및 지역 등)

- ① 저작재산권자가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_____년간 양수인에게 귀속되며, _____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저작재산권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즉시 저작재산권자에게 다시 귀속된다.

제6조는 ‘양도 유효기간 및 지역’에 관한 조항이다.

출판 등 관련업계의 관행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양도의 경우 ‘유효기간’을 둔다는 것은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하지만 영국, 독일 등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양도라 할 지라도 그것의 일부 또는 일정기간 등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이 낫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저작권자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금번 표준계약서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이며, 만일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유효기간을 없앤 다거나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을에게 귀속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조항은 필요 없으므로 삭제할 수 있다. (기타 내용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및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해설 참조)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양수인이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이 제3자에 의하여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 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양수인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는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부동산 같은 물권(物權)의 경우에는 그것의 등기부 등본 등을 열람함으로써 질권 설정 또는 소유권 변동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라고 믿을 만한 자료, 예컨대 발행된 책이라든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바탕으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7조에서는 저작재산권자가 만일 사전에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또는 이중 양도를 한 경우에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 책임을 양도인이 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한편, 제2항은 제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일반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 양도와 달리 양도 기간을 정하여 양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양도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저작재산권이 다시 저작재산권자에게 환원되어야 하므로, 만일 양수인이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그 일부나 전부를 다시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

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 책임을 양수인이 모두 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8조 (완전원고의 양도)

- ① 저작재산권자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양도대상인 위 저작물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함)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는 '완전원고의 양도'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완전원고의 개념은 여기서도 준용된다. 그리고 제8조에서 서로 합의하게 되는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 및 양도 시기는 추후 계약 위반 또는 배상 책임을 다루는 근거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함으로써 더 이상 계약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종료되도록 한 것이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는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창작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법적으로 완전한 저작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후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양도인이 져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제2항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료 지급, 저작재산권의 활용, 정보 등 출판 등을 위한 저작재산권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통상적으로 저작권자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저작권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수인은 계약서에 서명 날인 이전에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마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게 위해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제10조 (저작인격권 등의 존중)

- ① 양수인은 위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이용 연월일 등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양수인은 저작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양수인은 개정 및 증보 등 수정 또는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 저작자(저작자 유고 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완전원고에 임의로 양수인이 손질을 가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수인이 그 책임을 진다.

표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제10조는 ‘저작인격권 등의 존중’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제11조부터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는 한편,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이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격권이란 정신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그것을 경제적 또는 물질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격을 소유한 저작자로서의 당사자만이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정도를 느낄 수 있고, 가해자의 침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위자료(慰藉料)’라고 하여 물질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4조에서는 그러한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드러난 저작인격권의 성질은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저작자 자신만이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처럼 양도하거나 상속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것을 아는 어느 이용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무시하고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이용했다면 —예를 들어, 저작자의 이름을 인지도가 높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출판하거나 내용을 임의로 개작하여 외설물로 둔갑시키는 등— 원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임은 분명하다.

제2항은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자가 사망하여 저작인격권이 사라지고 없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 또는 상속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에 불과한 양수인은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에 각별히 유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양수인은 저작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서도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특히 양수인이 개정 및 증보 등 수정 또는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자(저작자 유고 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이를 알려서 양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일 저작

재산권자가 제공한 원전원고에 양수인이 임의로 손질을 가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제11조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

앞서 출판권설정계약이나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에서는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원전원고로서의 저작물을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그것을 출판물 등으로 제작하고 홍보하여 판매에 이르는 데에 드는 비용은 출판권자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만일 출판사 등에서 출판물의 기획 과정을 전부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정 저작자에게 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작에 필요한 비용까지 출판사가 부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른바 ‘자비출판(自費出版)’의 경우에는 저작 및 출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저작자가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이라면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하고, 저작물을 양수받아 출판 등의 제작, 홍보, 판매를 위한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제12조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 및 선금금)

- ① 양수인은 제2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금 _____ 원 (₩_____)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약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원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_ 일 이내에 저작재산권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양수인은 이 계약 성립과 동시에 선금금으로 _____ 원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며, 이후 지급할 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2조는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 및 선금금’에 관한 조항이다.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판매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나, 여기서는 저작물 그 자체의 재산권을 양도 양수하는 것이어서 양수대금 지급방식이 일괄 지급인 경우가 많으나, 거래 관행상 현실적으로는 선금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선금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선금금 없이 양도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등 양도인 및 양수인 사이에 또 다른 지급 기준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13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용허락,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 만료 시점까지 모든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3조는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서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주체는 저작재산권자가 아닌 양수인이다. 곧 특정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자기 권리에 입각하여 해당 저작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으므로, 제3조에 의한 양도

의 범위, 제6조에 의한 양도 유효기간 등이 정해져서 제한적인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경우라면 그 조건과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일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양도한 저작재산권을 회수해야 하는 것이다.

제14조 (원고 등의 반환)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특약에 의한 추가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원고 및 기타 자료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4조는 ‘원고 등의 반환’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서는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경우와는 달리 추가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는 원고반환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이에 관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재산권자 또는 양수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저작재산권자 또는 양수인(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이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간에 어떤 사정이 발생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급적 계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미이다. 법적으로도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때는 계약을 해지(장래적으로 더 이상 계약에서 정한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해제(계약관계를 소급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소멸시키는 행위, 이 경우에는 서로 원상회복(반환)의무가 발생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인 성희롱, 성폭행 문제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자 또는 양수인(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다.

제16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6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주체’에 관한 조항이다.

15조 제4항에서 계약 당사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중요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성희롱 등의 피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한 피해 구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제17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조항이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서 굳이 계약서 조문으로 넣지 않아도 되지만, 상호 계약 사항 준수를 촉구하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규정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작성된 계약 내용을 어느 일방이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을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8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다 보면 계약 내용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배려하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 법원으로 한다.

제19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배려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113조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조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114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조정 업무 및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판권설정 계약서’ 제28조 해설 참조)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특약 사항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등)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끝으로, 계약서는 2통이 아닌 3통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위의 특약사항에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경우 2통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의 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다면 등록용을 포함하여 3통을 작성해야 한다.

5. 저작물 이용계약서 (국내용)³⁶⁾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	이명(필명) : 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	
저작물의 분량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_____과(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함) _____는(은)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저작물에 관하여 그 이용 방법 및 조건과 범위 등 저작물 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는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목적'조항이다.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목적이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이용자와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정하고자 하는 계약임을 밝히고 있는 규정이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료 등 조건과 범위를 정하여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3.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4.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6)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위 저작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허락 내용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양자의 선택적 합의에 따라 이용자가 비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효력의 이용권만을 갖거나 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이용권을 가질 수도 있는, 준물권적 효력이 아니라 채권적 효력만 미치는 계약 유형이다. 기존의 단순이용허락계약 유형과 독점이용허락계약 유형을 통합한 것이다.

제2조는 저작물 이용계약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다.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관련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개념들 즉, ‘이용허락, 저작인격권, 계약의 해지와 해제, 분쟁조정’ 등에 대해서만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었다.

제3조 (이용허락) 저작권자는 이용자에게 위 저작물을 이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할 것을 허락하고, 이용자는 이 계약의 허락 내용에 따라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제3조는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저작권자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허락받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내용)

- ① 이용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직접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별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없다.
-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제4조는 ‘이용허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는 이용허락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출판 등을 목적으로 직접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게 할 수 없고,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 서면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한편,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허락한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또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에는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허락 계약서에 이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자가 같은 저작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순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같은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은 독점이용허락계약에 해당할 것이다.

제5조 (저작물 이용기간 등)

- ① 이 계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_____년 간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이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다시 계약하여야 한다.

제5조는 ‘저작물 이용기간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경우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저작물 이용허

락계약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이용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약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이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저작권사용료 등)

- ① 이 계약에 따라 위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저작권사용료는 일금 _____원(₩_____)으로 정한다.
- ②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저작권사용료를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한 지정계좌는 아래와 같다.

제6조는 ‘저작권사용료 등’에 관한 조항이다.

먼저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저작권사용료 금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사용료는 저작물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용자로부터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금전을 말하는 것이다. 출판권설정계약과 달리 저작물이용허락 계약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작권사용료를 일괄 지급하는 관행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을 특정하여 명시하도록 하였다. 2항에서는 위와 같이 합의된 저작권사용료 지급 일자를 확정함으로써 저작권사용료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 및 이용 시기)

- ① 저작권자는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위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는 ‘완전원고의 인도와 이용 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출판권자는 저작권법 제58조에 따르면 ‘언제까지 출판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없는 한, 완전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허락계약의 경우에는 위 저작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제1항에서는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즉,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완전원고’의 인도시기에 대해 규정하면서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완전원고 인도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항에서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이 또한 쌍방이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는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창작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권자’가 져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제2항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사용료 지급, 저작물의 활용, 정보 등 이용자가 통상적으로 저작권자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 날인 전에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마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이용자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등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는 ‘저작인격권의 존중’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제11조부터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는 한편,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올바르게 하고, 동일성유지권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확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이용자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는 ‘교정’에 관한 조항이다.

제9조에서 살핀 것처럼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정책임은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스스로 교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그 과정을 전문 편집자를 직원으로 두고 있는 이용자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수행된 교정 및 교열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작인격권자인 저작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11조 (비용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이용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이라면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자가 부담하고, 저작물을 허락받아 출판 등의 제작, 홍보, 판매를 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제12조 (저작권의 표지 등)

- ① 이용자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등의 성명과 이용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 표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는 ‘저작권의 표지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출판권자는 반드시 그 복제물에 저작권자를 표지(標識)해야 하는데 저작권법이 미치지 않는 저작물 이용계약이지만 이를 준용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적당한 방법, 즉 표지 및 간기면 등에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을 표지해야 한다.

제13조 (정가, 제작 방식 등)

- ① 위 저작물의 이용물에 대한 정가, 제작 방식 등과 함께 이용물의 판매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이용자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이용자는 이용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는 ‘정가, 제작 방식 등’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출판계의 관행에 따라 위의 제11조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는 원칙의 취지에 따라 이용자가 출판물 등에 대한 정가, 관행, 제작 방식 그리고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용자는 이용물을 홍보 및 광고하는 과정에서 과장 및 허위광고로 인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제14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 등)

- ①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한 저작물의 완전한 결과물을 제작 완료일 1개월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 결과물이 도서 등 유형물일 경우 _____부, 공중송신 및 회원제 서비스의 경우 관리자 계정이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수량을 초과하는 이용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__%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용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4조는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 등’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이용자가 업계의 관행 또는 계약 규정에 따라 자신이 이용한 완전한 결과물을 저작권자에게 증정하는 수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제2항은 1항에서 정한 증정 부수 등을 초과하여 저작권자가 더 필요한 증정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서점이나 유통 채널에서 정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오랜 출판계의 관행으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이용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7조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④ 저작권자 또는 이용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간에 어떤 사정이 발생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급적 계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미이다. 법적으로도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때는 계약을 해지(장래적으로 더 이상 계약에서 정한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해제(계약관계를 소급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소멸시키는 행위, 이 경우에는 서로 원상회복(반환)의무가 발생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인 성희롱, 성폭행 문제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자 또는 양수인(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16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6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제15조 제3항에서 계약 당사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중요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성희롱 등의 피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한 피해 구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제17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이용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는 ‘재해, 사고’에 대한 조항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재난에 따른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쌍방이 불가피하게 당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후속 조치를 합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다.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19조 (개인정보의 취급)

- ①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위 저작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이 계약에 의한 이용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서로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용자가 이용물의 제작 및 판매 촉진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초상 이용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나 범위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을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0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다 보면 계약 내용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배려하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 법원으로 한다.

제21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배려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113조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조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114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조정 업무 및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판권설정 계약서’ 제28조 해설 참조)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6. 저작물 이용계약서 (해외용)³⁷⁾

저작권자

이름 및 주소 : Ganada Publishing Co., Ltd.,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1번지

출판사(해외)

이름 및 주소: ABC Publishing Co., Ltd., 영국 런던 1번지

저작물

제호 및 저자명 : I LOVE KOREA written by Hong Gildong, illustrated by Kang Ildong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 저작권자(Proprietor) _____와(과) 해외 출판사(Publisher) _____는(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물 이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출판 및 공중송신 허락)

- ① 저작권자는 출판사에 대하여 위 저작물을 _____(언어)로 번역하여 이용할 권리 및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_____(국가, 혹은 언어권)에서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 혹은 e-플랫폼을 포함한 출판시장에 위 저작물을 위의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거나 e-Book(전자책) 및 오디오북 등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이때 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구체적 사양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 ②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년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는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____개월 전까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만일 계약 연장을 위한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한국어판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의 언어로 번역 출판 배포하게 될 경우, 양자 합의 아래 그 시장 영역을 '전 세계(World)'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혹은 계약 출판사 당사자 소재 국가로 한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영국 소재 출판사와의 계약일 경우, 시장 영역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국가로 한정할 수 있고, 북미(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로 지정할 수도 있다. 번역 출판되는 형태도 과거 종이책 포맷에서 현재는 전자책, 오디오북,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챕터별로 해당 저작물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작물 형태와 시장 유통 공간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각각의 포맷 유형의 범위와 유통 시장 영역은 양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다.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계약일로부터, 혹은 해당 번역판

37) 이 계약서 모델은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에이전시(대리중개업체)와 해외 출판사 또는 해외 저작권에이전시(대리중개업체) 사이에 유용하다. 하지만 저작물의 해외 출판 또는 공중송신을 위한 일체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저작권재산권자)에게 있으므로,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물 해외 수출에 따른 제반 권리를 반드시 위임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번역출판 및 배타적 발행을 위해 맺는 계약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출판 및 기타 발행과 관련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등 권리 내용에 대하여는 외국 계약상대방 국가의 저작권 관련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간일로부터)이나, 상황에 따라 5-10년으로 정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 영미권의 경우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되기도 한다.

제2조 (선금금 및 저작권사용료율)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한 선금금 및 저작물의 판매부수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이때 선금금은 추후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한다.

- ① 선금금 : USD _____ (서명 시 지불)
- ② 인세율 : 종이책: _____부 판매까지 도서정가의 _____%, _____부 이상 도서정가의 _____% 전자책 및 오디오북: 순수익의 _____%
- ③ 위 선금금 및 저작권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 a) 현지 원천징수세액(withholding tax) _____%
 - b) 저작권자 _____%
 - c) 선금금 별도로, 데이터(표지, 혹은 내부 일러스트 사용 시) 파일 사용료 NET USD _____
- ④ 출판사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_____일 이내에 그에 대한 납부증빙서류를 저작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출판사가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한 선금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⑤ 해외 현지에서 제3자에게 부차적인 저작물 이용권(이하 '부차권'이라 함)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에 대한 국내 저작권자와 해외 출판사 간 분배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a) 위 저작물 출간 전 연재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 b) 위 저작물 출간 후 연재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 c) 복클럽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 d) 앤솔로지, 축약, 인용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 e) 오디오북, 오디오 리딩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 f) 페이퍼백 출판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 g) 기타 _____

선금금은 계약금의 형식으로 통상 계약서 서명 시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며, 반환되지 않는다. 지불 일정과 관련하여, 영미권이나 유럽으로의 수출 시 현지 출판사는 경우에 따라, 그리고 선인세 규모와 관계없이 2회에서 4회에 걸쳐 지불되는 경우가 많다. 2회에 지불될 경우 서명 시와 출간 시에 각각 50%씩, 3회에 걸쳐 지불될 경우 서명 시와 번역원고 입고 시 및 출간 시에 각각 1/3씩을, 4회에 걸쳐 지불될 경우 서명 시 25%를 필두로 번역원고 인도 시와 하드커버 출간 시 및 페이퍼백 출간 시 각각 25%씩 지불하는 등, 그 지불회차와 유형이 다양하다. 따라서 해외에서 이런 제안이 올 경우, 탄력적으로 조율하여 정하면 된다.

표지나 본문 일러스트 사용료는 통상적으로 선금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선금금과 별개로 지불되기도 한다. 선금금(추후 발생하게 될 추가 저작권사용료 포함)에는 현지 원천세율이 적용되어 해외에서 지불 송금 시 해당 세율 적용 금액만큼 공제한 후 지불되며, 경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에서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이중과세 방지, 혹은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세율보다 높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저작권자 소재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비거주자 확인' 서류를 요청하는데, 이에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본 과세보다 높은 현지 원천세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현지 원천세 납부증빙서류는 추후 현지 출판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제5항의 부차권은 해외 출판사가 현지의 제3자(출판사)에 각각의 부차권을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 해당 비율의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그 해당 부차권 수입에 대한 저작권사

용료 정산 지불 시점은 통상적으로 해외 출판사가 연중(연 1회 내지 2회) 약속된 시점에 행하는 저작권사용료 정산보고 시 반영하여 처리된다. 이 항목은 현지에서 해당 저작물이 다양한 포맷(버전)으로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어 수입을 창출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해외 출판사에서 원할 경우 적극적·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배 비율은 가장 일반적인 수준을 명기한 것으로, 양자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다.

제3조 (출판사의 의무)

- ① 출판사는 계약서 서명 완료 시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청구내역서(Invoice)에 명시된 지불일에 따라 현지 원천세(local withholding tax) 공제 후의 선금금 USD _____를 저작권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한다. 저작권자는 선금금이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저작물이 게재된 도서의 본문 및 기타 관련 파일을 출판사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번역 작업용 견본도서 _____부를 출판사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위 저작물과 관련한 파일은 해외 발행사의 독점적 발행권과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제한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 ② 출판사가 속한 현지 출판시장에서의 번역 발행권 침해의 대책으로, 출판사가 확보한 번역 발행권을 현지 제3자가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는 그 침해 단속의 협력을 위하여 출판사에 위임장을 제공하고 출판사가 자체의 비용으로 저작권자와 연락한 후에 단속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침해자로부터 얻은 보상금은 현지 변호사 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출판사와 저작권자가 같은 비율로 나눈다.

저작권자는 해외 출판사로부터 선금금(혹은 저작물 내부의 기타 일러스트·도판·사진 등의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받은 후 통상적으로 2~3주 내로 작업용 견본도서와 편집 제작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 파일을 직접 발송·제공한다. 한편, 해외 현지에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침해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 현지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현지 출판사에 그것을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행할 자격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받게 될 보상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4조 (회계의 보고)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위 저작물에 대한 발행물 판매내역을 다음 해 _____월 _____일까지 서면 보고하고, 추가 저작권사용료 발생 시 해당 금액을 _____월 _____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필요 시 직접 또는 지정 대리인을 통하여 출판사에게 저작물 판매와 관련한 출판사의 회계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출판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회계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 감사 비용과 그 손해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내역 상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오류로 인한 오차범위 5% 미만의 계산상 착오는 예외로 한다.

해외 출판사로부터 보고받은 저작물 판매보고 내용에 신뢰가 가지 않을 경우, 해외 출판사에 정중히 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추후 재확인된 보고서상 내용이 최초 보고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게 발생했을 경우, 혹은 유통·재고 확인 과정에서의 미세한 수치상의 오류로 5% 미만의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에서 예외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조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방법)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위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의 은행계좌 또는 이후에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불한다.

은행명 : _____ 은행지점 : _____
은행주소 : _____ 계좌주 : _____
계좌번호 : _____ 은행코드 : _____
스위프트 코드 : _____

제5조는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금융제도를 잘 파악하여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제6조 (출판사의 발행 책임)

- ① 출판사는 이 계약일로부터 ____개월 이내에 출판사의 비용으로 위 저작물을 번역 발행한다. 출판사가 위 기간 안에 발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발행사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환원된다. 다만, 출판사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발행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출판사는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 증정본으로 현지어 번역본 ____부를 발행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재쇄의 경우에는 각쇄마다 2부씩 저작권자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저작권자는 증정본 그 이상의 부수에 대하여는 출판사로부터 판매정가의 ____% 가격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 ③ 출판사가 계약기간 중 개정판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저작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제6조는 ‘출판사의 발행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 명시되는 출간기한은 통상 18개월이 적당하다. 다만,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 출간되지 못할 경우, 해외 출판사는 사전에 합당한 사유를 명기하여 보고하고 동의 및 승인을 얻는다.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기한을 넘겨 출간되는 예가 현실적으로 종종 발생한다. 그 원인은 보통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추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계약 위반 통보 형식보다는 상호 이해 협력 모드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배려 차원에서 출간시한 연장을 허락해주는 것이 향후의 상호 비즈니스 연계에도 도움이 된다. 문학이나 전문서적의 경우, 혹은 시리즈물일 경우, 계약기한을 넘기는 예가 자주 있다.

제7조 (번역)

- ① 위 저작물의 번역에 있어 현지 독자의 정서를 감안하여 약간의 불가피한 수정을 용인하되 원작에 충실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수정을 하더라도 원작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바꾸거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판사가 원작을 요약하거나 원작의 문구 또는 삽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출판사는 발행 전 저작권자에게 번역물 발행본의 표지디자인 시안 및 출판권 및 저작권 표기 문안을 제출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 ③ 출판사는 어떤 국가에서도 출판사의 발행본이 공유저작물이 되어 발행되거나 배포 또는 전송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본이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을 보증하는 모든 필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는 동시에 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환원된다.

④ 위 저작물의 원제목과 저자명(삽화가 포함)은 관례에 따라 모든 부수의 표지, 저작권 표기면(간기면) 및 공중송신물, 그리고 저작물의 모든 광고물에 명시되어야 한다.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전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는 ‘번역’에 대한 규정으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2항에 명기된 바와 같이 해외 출판사로부터 저작물의 번역본 출간 전에 표지와 간기면 문안 표기 시안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종종 저작물, 저작권자(저자), 한국 출판사명, 크레딧 라인(credit line), 발행연도 등의 영문 표기가 잘못 명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해외에서 저작물의 번역출간 전에 번역본(번역원고)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저작권 수출입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내용상 오역의 여지가 많거나 정확한 감수를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 효율을 위해 굳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일 그런 요구를 통해서 번역원고를 받았을 경우 너무 오랜 기간 검토하여 현지에서의 출간 일정에 누를 끼치는 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제8조 (저작권 표기) 출판사는 번역 발행본의 표지와 저작권 표기면에 저작자 성명과 원제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저작권 표기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하여야 한다.

원서명(저작물)

Text copyright © ____년도, ____ (작가명)
Illustration copyright © ____년도, ____ (일러스트 작가명)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n by 저작권자명(한국 출판사명)
____(언어) translation copyright © (해외)출판사명., 202X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한국)저작권자명 through 에이전시명(국내, 혹은 해외)

[예시]

I Love Korea

Text copyright © **2020, Hong Gildong**
Illustration copyright © **2020, Kang Ildong**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n by **Ganada Publishing Co., Ltd.**
English translation copyright © **Sung Choonhyang, 202X**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Ganada Publishing Co., Ltd.** through _____ **Agency**

제8조는 ‘저작권 표기’에 관한 규정으로, 저작물이 번역출간 전에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그 표기가 정확한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아시아 출판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데, 영미·유럽권역 출판사에서는 가끔 이 과정 없이 책을 출간하는 바람에 추후 수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제9조 (저작권 보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권리 이외의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서면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위 저작물을 번역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출판사가 관련 서류 요청 시 저작권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는 ‘저작권 보유’에 관한 규정으로, 다시 한 번 모든 권리의 근원이 저작권자임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출판사는 이 계약에서 명시한 권리 이외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의 자기 권리에 대한 입증 책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①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출판사가 위 저작물에 대한 번역 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출판사가 위 저작물 발행 시점으로부터 ____년 후 더 이상 재쇄 발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간 판매수가 ____부 미만일 경우
3. 출판사가 국내 저작권자의 서면에 의한 계약조건 이행 통지를 받고도 ____일 이내에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출판사가 파산을 선언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5. 출판사가 판매의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 모든 권리는 즉시 저작권자에게 환원되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 및 손해, 기타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후 ____개월 동안 재고분을 판매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해당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재고분 판매시한이 종료되면 해외 발행사는 즉시 남은 재고분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제10조는 ‘계약의 종료’ 즉,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그 중에서도 제1항 제2호의 경우, 해당 시점과 부수는 판매보고서를 점검한 후 추이를 보며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현지 출판사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영미권 출판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예도 있으며, 계약기간이 명시되더라도 10년 안팎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연중 판매량이 거의 없고, 일정기간 동안 재쇄도 없으며, 해당 저작물을 위한 특별한 프로모션 등 마케팅 또한 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출판사와 계약 종료를 목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제2항의 경우, 계약 종료 후 재고분에 대한 판매 유예기간으로는 통상 12개월을 부여한다. 짧게 잡을 경우는 통상 6개월로 정하기도 한다. 계약 시 이 기간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한 후 확정하면 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상실)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일 이내에 해외 발행사가 국내 저작권자에게 제2조에서 합의한 선급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1조는 ‘계약의 효력 상실’에 관한 규정으로, 이 계약에서 정한 날짜까지 해외 발행사가 선급금을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이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저작권법 위반이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국내 저작권자의 소재지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정한다. 다만, 양자의 합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소송은 저작권자 소재지와 해당 도시 관할법원으로 삼는 것이 표준이지만, 영미권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준거법을 자국 현지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 출판사에서는 이 부분을 관례적으로 고수하려고 한다. 따라서 계약 시 이 부분은 사정에 따라 양자 합의 아래 탄력적으로 변경하면 된다.

이 계약은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이 계약에 포함된 대리인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계약의 수정이나 의무 면제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는 증인(대리인)의 입회하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

국내 저작권자 : Ganada Publishing Co.,

서명

서명인 / 서명일

해외 출판사 : ABC Publishing Co., Ltd.

서명

서명인 / 서명일

가급적이면 서명인의 자필서명이 좋다. 한국에서는 인감(직인)이 일상적이거나 해외에서는 서명인의 자필서명이 없고 도장만 찍힌 경우 유효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으니, 서명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상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 각 페이지 하단 일부분 공간에 서명인의 머리글자만의 약식 서명인 이니셜(initial) 서명 병행도 영미권과 유럽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 신규안 :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1.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2. 오디오북 유통계약서
3. 오디오북 제작계약서
4. 오디오북 저작권접권 이용허락계약서

1.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³⁸⁾

저작권자의 표시	
성명 :	이명(필명) :
발행사의 표시	
회사 :	
주소 :	
사업자번호 :	
대표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_____ 과(와) 이를 오디오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발행사'라고 함)는(은) 다음과 같이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오디오북을 제작·판매·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저작물을 발행사에게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권리와 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제작, 판매, 유통하는데 필요한 내용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즉,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생긴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38) 일반적인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로도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반 전자책 등 디지털 발행물과 비교하였을 때 두드러지는 오디오북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된 새로운 계약서 유형이다.

7.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8.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9.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10.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1.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이다.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관련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중요한 개념의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3조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정’이란, 출판권에서 살핀 것처럼 쌍방 간의 계약에 따라 새로이 제한적인 물권 따위의 배타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배타적발행권 역시 그러한 설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오디오북 제작 방법이나 저작물 이용 조건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계약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제3조 해설 참조)

제4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는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한 조항이다. 배타적발행권도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배타적발행권 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³⁹⁾ 곧 저작재산권자가

39)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다른 이용자와 이종으로 똑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배타적발행권 등록은 배타적발행권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이다.⁴⁰⁾ 계약서 말미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다.

제5조 (배타적 이용) 발행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5조는 배타적발행권자의 배타적 이용에 따른 제한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발행사에게 배타적발행에 따른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제6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 ① 발행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_____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__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____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 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는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제59조⁴¹⁾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과 저작물의 분리 이용에 따른 예외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 제59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적당한 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처분제한

- 40) 저작권법 시행령 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축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41) 저작권법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2항은 해지 통고에 관한 내용이다. 오디오북에 관한 배타적발행권 또한 계약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저작재산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미리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쌍방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계약 조건으로 갱신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 시한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내용이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한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같은 계약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동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더 이상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 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은 종료된다.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계약 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발행사로 하여금 저작권자에게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충분히 통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반환)

- ① 저작권자는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특약이 없는 경우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을 9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는 '완전원고의 인도와 반환'에 관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권법 제58조에 따르면 '언제까지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없는 한,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이라고 한 것은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완전원고'라는 말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저작물 작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완전원고 인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는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창작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저작물의 법적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자 등에게도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완전한 저작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후 판매 촉진 활동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권자가 져야 한다는 뜻이다.

제2항에서는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게 함으로써 계약의 완전성을 얻고자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9조 (원고 수정 요청 및 오디오북 제작의 의무 등)

- ① 발행사는 저작권자가 인도한 원고가 오디오북 콘텐츠 제작에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9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 후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위 저작물의 낭독 범위는 원고 전체로 정하며, 다만 일부 발췌 또는 요약이 필요한 경우 발행사는 반드시 저작권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9조는 ‘원고 수정 요청 및 오디오북 제작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저작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까닭에 저작재산권자 또는 복제권자라고 하지 않고 ‘저작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을 다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제1항에서는 이 같은 취지를 담고 있으며, 다만 저작물의 성질,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자의 부담 정도, 그리고 업계의 관행 등을 참작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저작자의 과도한 수정·증감으로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반대로 저작자의 정당한 수정 또는 증감 요구를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자가 묵살함으로써 저작자가 입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배상 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제2항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부터 저작권자와 협의한 기일 내에 저작물을 오디오북으로 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원고(저작물) 전체의 오디오북 낭독이 아닌 일부 발췌나 요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발행사가 반드시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10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 ①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 등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채널 : B2C () / B2BC () / B2B ()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방식 : 다운로드 () / 스트리밍 () / 뉴미디어 ()
<input type="checkbox"/> 유료 여부 : 유료 () / 무료 ()
<input type="checkbox"/> 판매 방식 : 구매 () / 대여 () / 구독 ()
<input type="checkbox"/> 부가 서비스 : 미리듣기 () / 요약본 ()

- ② 발행사는 제1항에서 정한 조건과 방식으로 오디오북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부속 합의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가격,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 ④ 발행사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쳐 홍보·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 콘텐츠를 무료로 공중송신하거나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발행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는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오디오북 발행 등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서비스 채널을 비롯하여 서비스 방식, 유료 여부, 판매 방식, 부가 서비스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타적 발행권의 확실한 권한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항에서는 그 밖에 또 다른 이용 방식 등이 있을 경우 쌍방 간 협의를 거쳐 별도의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제3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디오북의 판매 가격, 발행 시기, 홍보·광고, 판매 방법 등의 결정은 발행사가 하지만 저작권자의 자존감과 신뢰를 위해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항에서는 전송물 등을 홍보 및 광고하는 과정에서 과장 및 허위 광고로 인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 관계자들은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는 ‘저작인격권의 존중’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제11조부터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는 한편,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관련 조항 참조)

제12조 (저작권사용료 등)

- ①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매출액의 _____%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 ② 발행사는 _____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발행사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직전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이 산정되

있음을 발행사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2조는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저작권사용료 금액, 즉 저작물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용권자로부터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금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유형물(도서)에 매겨진 가격(정가)의 일정한 비율로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따라 계산되는 출판물과는 달리 오디오북의 경우에는 이용 방식에 따라 가격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출판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간에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저작권사용료의 비율과 지불 방법을 놓고, 또는 이미 정해진 계약 내용을 놓고 저작재산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 사이에 상당한 진통을 겪거나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이용 방식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제2항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매출 현황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동시에 저작재산권자는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 산정 기준이 된 매출액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양자 모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전체 저작권사용료를 벗어나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제13조 (선급금)

- ①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__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 ②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3조는 ‘선급금’에 관한 조항이다. 이는 계약에 관한 신뢰를 높일 목적으로 지불되는 일종의 계약금이며, 다만, 저작권사용료를 미리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될 저작권사용료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제14조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및 공중송신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는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에 관한 조항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45조 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제62조 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배타적발행권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권자로부터 획득한 권리(배타적발행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제1항에서는 그럼에도 만일 저작권자가 발행사에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 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도의에 입각하여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발행사(배타적발행권자)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만일 발행사가 자신의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15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이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발행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발행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내용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발행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발행사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사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자격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2차적 및 부차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 2차적 및 부차적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 및 발생 수익의 분배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5조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가리키며,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저작물에 관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곧 여러 가지 저작물의 형태를 원저작물로 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를 2차적저작물이라고 한다.

제1항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재산권자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발행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2차적저작물이 아닌 저작물 그 자체의 재사용에 따른 이용허락에 관한 조항이다. 특정오디오북에 실린 저작물의 일부를 또 다른 오디오북이나 정기간행물 등에서 재수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이용권한은 저작재산권자에게 있으며 발행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주고 제3자의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2차적 또는 부차적 이용에 따른 실무적인 부분은 발행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는 ‘계약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서 굳이 계약서 조문으로 넣지 않아도 되지만, 상호 계약 사항 준수를 촉구하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규정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작성된 계약 내용을 어느 일방이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즉시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미래의 발전적 관계 설정에도 그리 좋은 처사는 아닐 것이다. 다만,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도 양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제1항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일정기간 안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제2항에서는 1항과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계약 이행을 기피한다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조치로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3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사에서 더 이상 발행 등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

아울러 제4항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 계약서’ 제23조 해설 참조)

제18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8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8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우리나라 법은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 력범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방지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인권 침해와 업무상의 불이익이나 환경 악화 등의)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이다. 구제를 지원하는 기관은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률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형사, 민사, 가사 소송(고소, 제정 및 항고 신청, 본인소송 등 포함)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 등이 있다.

제19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 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조항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재난에 따른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쌍방이 불가피하게 당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후속 조치를 합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비밀 유지)

-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발행사 간 주고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계약 종료 후 상대방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다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경우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다.

제2항은 계약 종료 후 쌍방 간 주고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제21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1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 내용만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 법원으로 한다.

제22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이다. 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113조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조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114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조정 업무 및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정(調停)’은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조정 시킴으로써 ‘화해(和解)’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저작권 관련 분쟁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정업무의 중요성을 헤아릴 수 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다른 분쟁에 비해 대개 소액을 둘러싼 경우가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소송에 의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무리가 많은 까닭에 당사자끼리 화해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분쟁을 소송에 의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소송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해 조정은 비공개 상태에서 화해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저작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 또한 많은데, 조정을 통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정식재판에 앞서 전문기관이 화해에 의한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중재에 나선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취지에서 저작권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각종 권리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정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제1항에서는 분쟁에 따른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앞서 배타적발행권에서 살핀 것처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배타적발행권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2통이 아닌 3통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위의 특약사항에서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경우 2통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다면 3통을 작성해야 한다.

2. 오디오북 유통계약서⁴²⁾

오디오북 발행사(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

회사명 :
대표자 :
대상저작물 :

오디오북 유통사의 표시

회사명 :
대표자 :

오디오북 발행사 _____ (이하 ‘발행사’라고 함)과(와) 오디오북 유통사 _____ (이하 ‘유통사’라고 함)는(은)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배타적발행권자인 발행사가 유통사에게 납품하는 오디오북의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발행사(배타적발행권자)와 유통사가 이 계약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의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 방식에 의한 유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4.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5. 계약의 해지 :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6.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이다. 오디오북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관련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

42)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오디오북의 유통(판매 및 구독서비스 방식 포함)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공중송신 서비스를 목적으로 오디오북 발행사와 유통사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였다.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중요한 개념의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제3조 (권리와 보증)

- ① 발행사는 이 계약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자로서 오디오북의 복제 및 전송을 허락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 ②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통사는 복제 및 전송 등의 방법으로 오디오북을 판매하거나 구독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③ 유통사는 이 계약 대상 저작물을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에 제공함에 있어 복제방지장치 등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유통사는 이 계약 대상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유통사는 발행사가 그 판매 및 구독 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그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는 ‘권리와 보증’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적 권한 보유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제1항은 발행사가 오디오북의 복제와 전송을 허락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조항이다.

제2항에서는 유통사가 오디오북을 복제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판매, 구독서비스 제공의 권한을 이 계약에 의해 부여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오디오북의 불법적인 이용과 그에 따른 발행사와 유통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디오북의 검색과 이용을 위한 서비스 개발 시 불법적 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통사의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제4항은 유통사가 이 계약 체결 이후에 오디오북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제5항은 오디오북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전자책 발행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제공할 것을 의무로 제시한 것으로, 오디오북의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비용의 청구와 정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4조 (계약기간 및 효력의 발생)

-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_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 계약기간 만료일 _____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____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유효한 상황임에도 발행사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이 종료된 경우 발행사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유통사에게 제3조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는 ‘계약기간 및 효력의 발생’에 관한 조항이다. 1항에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함이다. 2항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발행사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유통사가 오디오북을 복제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판매, 구독서비스 제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5조 (계약의 갱신)

- ① 발행사와 유통사는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_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유통사는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을 추가로 판매하거나 구독서비스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계약기간 이내에 판매의 형식으로 제공한 오디오북의 이용에 관한 권한은 이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5조는 ‘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계약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 계약의 내용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이라도 계약의 지속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더 이상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계약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계약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 종료 몇 개월 전에는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인 기간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제2항에서는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발행사가 오디오북의 판매나 구독서비스를 위해서 제3자에게 오디오북을 제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오디오북의 서비스)

- ① 오디오북의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서비스 유형			
채널	B2C ()	B2BC ()	B2B ()
판매방식	구매 ()	자동반출 ()	구매 ()
	대여 ()	아웃링크 ()	대여 ()
	구독 ()		
□서비스 방식 : 다운로드 (), 스트리밍 (), 뉴미디어 ()			
□유료 여부 : 유료 (), 무료 ()			
□부가 서비스 : 미리듣기 (), 요약본 ()			

- ② 유통사는 제1항에서 정한 조건과 방식으로 오디오북을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 대하여는 발행사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오디오북에 대한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유통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와 유통사는 사전에 결정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④ 유통사는 발행사와 협의를 거쳐 홍보·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오디오북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발행사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는 ‘오디오북의 서비스’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서비스 채널과 채널에서의 판매 방식, 서비스하는 방식, 유료와 무료의 선택 그리고 미리듣기나 요약본과 같은 부가 서비스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항에서는 1항의 범위에 해당되는 않는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는 유통사와 발행사 쌍방의 협의를 통해 부속 합의서로 작성할수록 하였다.

제3항에서는 오디오북에 대한 홍보, 광고, 판매 방법 등에 대해 유통사가 우선 결정을 하지만 사전에 발행사와 결정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항에서는 유통사가 오디오북의 홍보나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발행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저작자나 발행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항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제7조 (오디오북 주문·납품 및 정산)

- ① 발행사는 유통사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제작한 오디오북에 대한 정보 등을 유통사에게 사전에 제공하고, 유통사가 특정 오디오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유통사는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로 제공할 오디오북을 사전에 상호 합의한 방식에 따라 발행사에게 주문하고, 발행사는 유통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오디오북을 납품한다.
- ③ 유통사는 이 계약 대상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액의 _____%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사에게 지불한다.
- ④ 이용료의 정산은 _____개월 단위로 하며, 정산이 완료된 익월 말일까지 발행사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_____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는 ‘오디오북의 주문·납품 및 정산’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발행사가 유통사의 오디오북 판매에 있어 필요한 정보 일체에 대해 사전에 미리 충실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유통사는 제6조에서 규정한 오디오북 서비스 방식에 따라 발행사에게 주문하고, 발행사는 관련 오디오북을 충실히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3항은 제6조에서 규정한 오디오북의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사에게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정산할 매출액의 최소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8조 (판매 및 이용 허락에 대한 정산 보고 등)

- ① 유통사는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내역 및 가격, 수량, 이용료 등을 발행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 상호합의한 방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유통사는 이 계약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_____개월 간 이 계약 오디오북의 공급과 이용에 관련되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발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는 ‘판매 및 이용 허락에 대한 정산보고’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정산보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오디오북의 공급 내역 및 가격, 수량, 이용료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오디오북 발행사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오디오북의 공급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항에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 종료 후 쌍방이 합의한 기간 동안 관련 자료의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발행사에게 자료 요청의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및 손해배상 등)

- ① 이 계약기간 동안 어느 일방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제3조 제1항에 따른 보증에도 불구하고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통사는 해당 오디오북에 대하여 판매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이유로 유통사가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행사는 유통사의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과 관련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발행사는 권리 소멸 _____개월 이전에 이 사실을 유통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발행사로부터 권리 소멸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유통사는 _____일 이내에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하며, 권리 소멸 이후에 오디오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사가 권리 소멸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유통사에게 추가 비용 및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는 ‘서비스의 중단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계약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보충해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그 권리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손해배상은 저작권법에서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라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 등을 포함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제2항은 이 계약의 제3조 1항에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을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유통사가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구독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자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와 구독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통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와 구독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2항에 따라 판매와 구독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오디오북 판매와 구독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발행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 범위를 유통사의 손해액 전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4항은 발행사의 오디오북 복제와 전송에 관한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발행사는 오디오북에 대한 복제와 전송에 관한 권리가 소멸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효되기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유통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업무가 적법한 범위

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 소멸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권리 소멸에 대한 사실을 통보했으나 유통사가 권리 소멸 이후에도 판매와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발행사가 권리 소멸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유통사가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발행사가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면책)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발행사 또는 유통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이 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는 ‘면책’에 관한 조항이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재난의 상황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 부담을 면제하고, 후속 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 ① 발행사와 유통사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부도로 인한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하거나 회사 정리, 화의 또는 파산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인인 경우 청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격의 변경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발행사 또는 유통사의 소속 임직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는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의 해지란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550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계약당사자에게 해지권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2항은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부도로 인해 상대방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되거나 회사 정리나 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법인의 청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법인격의 변경이 발생했으나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자동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3항에서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제4항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23조 해설 참조)

제12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2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우리나라 법은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방지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인권 침해와 업무상의 불이익이나 환경 악화 등의)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이다. 구제를 지원하는 기관은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률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형사, 민사, 가사 소송(고소, 제정 및 항고 신청, 본인소송 등 포함) 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 등이 있다.

제13조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의 유통사의 의무)

- ① 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유통사는 지체 없이 발행사가 납품한 오디오북의 신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해당 오디오북과 관련된 모든 파일을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 ② 발행사는 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오디오북의 사용 중단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기간을 ____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③ 이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 유통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오디오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행사와 협의해야 하고, 이용료 정산방식은 상호합의에 따른다.

제13조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의 유통사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오디오북 유통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유통사는 바로 오디오북의 신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오디오북과 관련한 모든 파일을 영구 삭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오디오북 유통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서비스 사용 중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오디오북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쌍방간 협의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상호합의를 통해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에 의해 이 계약 대상 오디오북의 저작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나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사와 유통사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력하여 대처한다.

제14조는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 관한 조항이다. 발행사와 유통사 이외의 제3자가 이 계약 대상 오디오북의 저작권이나 배타적발행권 그리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권리

를 침해했을 경우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에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소송의 관할)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사와 유통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발행사와 유통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 법원으로 한다.

제15조는 ‘소송의 관할’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113조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조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114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조정 업무 및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6조 (부칙)

-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 및 사회 상규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 2.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문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 3. 오디오북별 공급 조건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으며, 첨부된 내용은 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4. 해당 오디오북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이용 조건은 <별첨>자료로 계약서에 첨부한다.

제16조는 ‘부칙’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서에 포함하지 못하였거나 유권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제1호에서는 계약서에 미처 담지 못한 사항에 대한 해석이나 결정이 필요할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쌍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호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이 문서를 통해 합의하여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오디오북이 다른 형태로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디오북의 구체적인 내역과 세부적인 거래 조건에 대해 별첨 자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첨 자료도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발행사와 유통사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발행사와 유통사가 나누어 갖게 되는데, 이 계약서 유형은 설정용이 아니기 때문에 3통이 아닌 2통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오디오북 제작계약서⁴³⁾

<p>제작사의 표시</p> <p>회사명 : 대표자 :</p> <p>발행사의 표시</p> <p>회사 : 주소 : 사업자번호 : 대표 :</p> <p>저작물의 표시</p> <p>제호(가제) :</p>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배타적발행권자(이하 '발행사'라고 함) _____과(와) 이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하 '제작사'라고 함) _____는(은) 다음과 같이 오디오북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함에 있어 발행사와 제작사에게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서에서 오디오북의 제작에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다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 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3.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이다. 오디오북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관련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중요한 개념의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3)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배타적발행권을 부여받은 발행사(출판사)가 직접 오디오북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에 오디오북 제작을 의뢰하는 업체(제작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_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제3조는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오디오북은 배타적 발행권 기반으로 파생된 계약서이며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의 명시를 통해 계속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상도덕을 세우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4조 (제작사의 의무)

- ① 제작사는 오디오북으로 제작 완료한 최종 저작물의 음원 파일을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작사는 오디오북의 녹음 방식, 내레이터, 배경음악 등을 발행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작사는 최종 오디오북 제작물의 이용권을 발행사에게 양도한다.
- ④ 제작사는 미완성 또는 최종 오디오북 제작물이 이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배포 및 공중송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작사는 오디오북 제작물에 대한 발행사의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4조는 ‘제작사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제작사가 발행사와 합의한 기간 안에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완성된 음원 파일을 인도해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행사와 기일에 대해 별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오디오북의 제작 과정에서 녹음 방식, 내레이터, 배경음악 등에 대해서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최종 완성된 오디오북 제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발행사에 양도해야 함을, 제4항에서는 미완성 또는 최종 오디오북 제작물이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또한 해당 저작물에 대해 발행사의 수정이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제5조 (발행사의 의무)

-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원고 등 오디오북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발행사는 오디오북의 제작 방향, 녹음 범위, 저작물의 형태 등을 결정함에 있어 제작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제작 시 낭독 범위는 도서 내용 전체(완독)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 발췌나 요약이 필요한 경우 발행사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다.
- ④ 발행사는 제작물의 검수 과정 중 일부 구간의 재녹음을 제작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는 ‘발행사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발행사는 제작사에게 오디오북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제작 방법, 녹음 범위, 저작물의 형태 등에 있어서 제작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오디오북의 일부 발췌나 요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사가 저작권자와 협의 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오디오북 제작물의 검수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재녹음을 제작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작비용)

- ①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__영업일 이내에 선금금으로 _____원을 제작사에게 지급한다.
- ② 발행사는 최종 오디오북 제작물을 제작사로부터 인도받은 후 _____일 이내에 잔금 _____원을 제작사에게 일괄 지급한다.

제6조는 ‘제작비용’에 관한 조항이다. 제작에 관한 계약서 체결 이후 쌍방 간 결정한 기일 이내에 선금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 검수가 완료된 오디오북을 제공한 이후 합의한 기일 이내에 잔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7조 (계약 변경) 이 계약은 제작사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는 ‘계약 변경’에 관한 조항이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상호 계약 사항 준수를 촉구하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규정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작성된 계약 내용을 어느 일방이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① 발행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_____일 이내에 선금금을 발행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이 계약은 발행사와 제작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⑤ 발행사 또는 제작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는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발행사와 제작사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간에 어떤 사정이 발생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일정기간을 정해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급적 계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미이다.

법적으로도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장래적으로 더 이상 계약에서 정한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해제(계약관계를 소급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소멸시키는 행위, 이 경우에는 서로 원상회복 및 반환 의무가 발생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제2항부터 4항까지는 바로 이러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인 성희롱, 성폭행 문제 등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주의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5항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23조 해설 참조)

제9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8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9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우리나라 법은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방지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인권 침해와 업무상의 불이익이나 환경 악화 등의)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이다. 구제를 지원하는 기관은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률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형사, 민사, 가사 소송(고소, 제정 및 항고 신청, 본안소송 등 포함)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 등이 있다.

제10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발행사 또는 제작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 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제’에 관한 조항이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재난의 상황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 부담을 면제하고, 후속 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제11조 (비밀 유지) 발행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____년 동안 유효하다.

제11조는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다.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다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경우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이러한 정보들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2조는 ‘계약의 해석 및 보완’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 내용만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나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행사와 제작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 법원으로 한다.

제13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113조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조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114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조정 업무 및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발행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발행사와 제작사가 나누어 갖게 되는데, 이 계약서 유형은 설정용이 아니기 때문에 3통이 아닌 2통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 오디오북 저작권접권 이용허락계약서⁴⁴⁾

실연자의 표시	
성명 :	이명(예명) :
발행사의 표시	
회사명 :	
대표자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낭독에 참여하는 실연자(이하 '실연자'라고 함) _____과(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오디오북 발행사(이하 '발행사'라고 함) _____는(은) 다음과 같이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저작권접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오디오북을 제작함에 있어 위 저작물의 낭독에 참여하는 실연자와 오디오북 발행사에게 필요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오디오북 저작물을 낭독하게 될 성우 등 실연자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오디오북 발행사 간 체결하는 계약으로 저작권접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는 목적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2. 저작권접권 :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접권이 주어진다.
3.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에게는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인격권과 함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재산적 권리가 부여된다.
4.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44) 낭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연자(實演者)로서 저작권접권을 갖게 되므로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발행사가 성우 등 낭독자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5.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이다. 오디오부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관련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중요한 개념의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는 실연 저작물에 대한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 변동에 대한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제3조는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인접권도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는 자기가 참여한 실연 저작물에 대한 권리변동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4조 (발행사의 의무)

-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원고 등 오디오북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실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발행사는 오디오북의 녹음 방법, 범위, 배경음악 등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실연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사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존중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완성된 오디오북에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발행사는 완성된 오디오북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는 ‘발행사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발행사는 오디오북 제작에 필요한 위 저작물의 원고를 실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오디오북 제작 시의 제반사항(녹음 방법, 범위, 배경음악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의 인격권을 존중하여 완성된 오디오북에 대한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홍보나 광보에 있어서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5조 (실연자의 의무)

- ① 실연자는 위 저작물의 내용을 이해하고 오디오북 기획 취지에 맞도록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녹음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발행사는 녹음된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연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는 ‘실연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실연자는 위 저작물의 내용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발행사와 합의하여 정한 기일 이내에 녹음을 완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 시 별도 협의를 통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1항의 결과물에 대해 발행사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고 다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급)

① 이 계약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 정산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산방식	일괄 ()	일괄+사용료 ()	사용료 ()
저작인접권 사용료	-	일괄 + 매출액의 _____%	매출액의 _____%

② 발행사는 제1항에서 ‘일괄’ 정산방식을 선택한 경우 이 계약 이후에 선금금으로 _____ 원을, 오디오북 제작을 완료하여 서비스가 시작된 날로부터 _____영업일 이내에 잔금 _____ 원을 실연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③ 발행사는 제1항에서 ‘일괄+사용료’ 혹은 ‘사용료’ 정산방식을 선택한 경우 실연자와 협의를 통하여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는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급’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 정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과 3항에서는 실연자가 1항에서 선택한 정산방식에 따라 선금금 혹은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급 방법에 대해 발행사와 협의된 내용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 (계약기간)

① 실연자는 제6조 제1항에서 일괄 정산방식을 선택한 경우 위 저작물로 제작된 오디오북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을 발행사에게 양도한다.

② 제6조 제1항에서 일괄 정산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사가 보유하는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권리는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_____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또한, 발행사 또는 실연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만약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____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발행사는 실연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는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으로 제6조 제1항에서 선택한 정산방식에 따른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항은 일괄 정산방식을 선택한 경우 오디오북 제작물에 대해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을 발행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일괄 정산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한 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을 보장하며, 자동 연장에 여부에 대해서도 쌍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조 (저작물의 이용 범위 및 권리 귀속)

- ① 오디오북의 서비스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행사에게 있으며, 실연자는 발행사의 서면 승낙 없이 자신의 실연 부분을 이용할 수 없다.
- ② 발행사는 실연자의 동의 없이 홍보·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중송신 및 공연할 수 있다. 다만, 오디오북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실연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는 ‘저작물의 이용 범위 및 권리 귀속’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오디오북 서비스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행사에게 있음을 규정하면서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 부분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사의 서면동의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홍보나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중송신 및 공연할 수 있지만, 실연자나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양도 금지) 실연자와 발행사는 쌍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9조는 ‘양도 금지’에 관한 조항이다. 실연자와 발행사 모두 쌍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① 실연자와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실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___일 이내에 선금금을 발행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이 계약은 실연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⑤ 실연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는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실연자와 발행사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간에 어떤 사정이 발생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일정기간을 정해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급적 계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미이다.

법적으로도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장래적으로 더 이상 계약에서 정한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해제(계약관계를 소급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소멸시키는 행위, 이 경우에는 서로 원상회복 및 반환 의무가 발생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제2항부터 4항까지는 바로 이러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인 성희롱, 성폭행 문제 등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5항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권설정계약서’ 제23조 해설 참조)

제11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0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1조는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조항이다. 우리나라 법은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방지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인권 침해와 업무상의 불이익이나 환경 악화 등의)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이다. 구제를 지원하는 기관은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률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형사, 민사, 가사 소송(고소, 제정 및 항고 신청, 본안소송 등 포함) 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 등이 있다.

제12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실연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 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에 관한 조항이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재난의 상황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 부담을 면제하고, 후속 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제13조 (비밀 유지) 실연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_____년 동안 유효하다.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다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경우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는 이러한 정보들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연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연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_____법원으로 한다.

제14조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113조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조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114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조정 업무 및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제소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을 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5조 (부칙)

- ① 이 계약은 실연자와 발행사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연자와 발행사 쌍방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별도 합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특약상의 내용이 본계약과 충돌하는 경우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제15조는 ‘부칙’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계약서에 포함하지 못하였거나 유권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별도 합의서를 통해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2항에 따른 내용이 본계약과 충돌하는 경우에 특약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실연자와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실연자와 발행사가 나누어 갖게 되는데, 이 계약서 유형은 설정용이 아니기 때문에 3통이 아닌 2통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김기태(1999), 『책—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 서울:도서출판 이채.
-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09),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11.12.14.),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 이규호(2010), 『저작권법—사례·해설』, 서울:진원사.
- 임원선(2012),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 허희성(1988), 『新著作權法逐條概說』, 서울:汎友社.